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제 1210호

2014년 12월 30일 화요일

선 람	기관의 장

조 례

○ 조 례 제1212호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2
○ 조 례 제1213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	5
○ 조 례 제1214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	9
○ 조 례 제1215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2
○ 조 례 제1216호	인천광역시남동구남동소래아트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	14
○ 조 례 제1217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창조경제 멘토서비스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7
○ 조 례 제1218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맑은터전 남동의제21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25
○ 조 례 제1219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29
○ 조 례 제1220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	37
○ 조 례 제1221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	44

공 고

○ 공고 제2014- 1897호	『옥외광고업 행정처분(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111
○ 공고 제2014- 1903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평생교육진흥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112
○ 남동구보건소 공고 제2014- 72호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	134
○ 남동구보건소 공고 제2014- 73호	건강기능식품에관한 법률위반업소 청문통지 공시송달공고	136
○ 남동구보건소 공고 제2014- 74호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신고(등록)사항 직권말소 예정 공고	138

고 시

○ 고시 제2014- 164호	통·반구역 조정 결정 고시	139
○ 고시 제2014- 165호	2015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고시	143

회 람								
----------------	--	--	--	--	--	--	--	--

발행 : 인천광역시 남동구

편집 : 홍보미디어실

조 례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장 석 현

2014년 12월 30일

남동구 조례 제1212호

남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2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2]

월정수당 지급 기준표(제3조 제2항 관련)

지급기준	월정수당
지급액(1인기준)	1,965,000원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34조 규정에 따른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의원 의정비 지급기준 결정 통보[의정 비심의위원회-1(2014.10.27.)]와 관련 해당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2015년도 의정비 지급기준을 명백히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월정수당 지급 기준표의 지급액을 1,932,500원에서 1,965,000원으로 조정(안 제3조의2 별표2)

조 례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장 석 현

2014년 12월 30일

남동구 조례 제1213호

남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공무원증 규칙」(행정안전부령)”을 “「공무원증 규칙」(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제2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8항부터 제11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임신 중인 공무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 이하 제3호를 제외하고 같다)·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2. 임신 중인 공무원이 출산휴가를 신청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3.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⑧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 그 공무원이 신청하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1. 유산 또는 사산한 공무원의 임신기간(이하“임신기간”이라한다)이 1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⑨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불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은 시술 당일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난자 채취일에 1일의 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⑩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으로서 임신 후 12주 이내에 있거나 임신 후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⑪ 구청장은 재직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공무원에게는 해당 재직기간 중 10일,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및 30년 이상 공무원에게는 해당 재직기간 중 각각 20일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2항을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11항은 201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제25418호, 2014.6.30.일부개정) 개정에 따른 모성보호시간 관련 규정 적용
- 장기재직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 부여로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고 활기 있는 조직 문화를 조성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중앙부처 기관 명칭 변경 (안 제12조제2항)
 - “행정안전부”→“안전행정부”
-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 개정 (안 제23조제2항)
 - 한 번에 두 명 이상의 자녀를 임신 공무원의 출산휴가 확대 : 현행 90일→120일
 - 출산 전후 휴가일수 및 특수한 경우 휴가사용일수 규정
-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 불임치료 시술 휴가 및 모성보호기간 신설 (안 제23조제8항 ~ 제10항)
- 장기재직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 신설 (안 제23조제11항)
 -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 10일
 -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 20일
 - 재직기간 30년 이상 : 20일

조 례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장 석 현

2014년 12월 30일

남동구 조례 제1214호

남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제7조제2항”을 “제7조제3항”으로 한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수의계약으로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 ① 영 제13조 제3항제19호에 따른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구금고로 지정된 은행에 대하여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2. 특정목적 수행을 위해 건립된 구유 행정재산의 운영을 위해 유관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33조 본문 중 “대부료가 100분의 10이상”을 “대부료보다 100분의 50이상”으로 한다.

제6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1조의2(변상금 징수의 유예) ① 영 제8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변상금의 최초 납부기한부터 1년의 범위에서 그 징수를 미룰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유예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납부의무자의 성명과 주소
2. 납부할 변상금의 부과연도, 금액, 납부기한
3. 유예신청 사유와 기간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변상금 징수에 대한 유예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납부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납부할 변상금의 부과연도, 금액, 납부기한
2. 징수유예 기간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 2014. 7. 7일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관련된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조문 정비(안 제4조제2항제1호)
- 행정재산을 수익계약으로 사용·수익 허가 할 수 있는 규정 신설(안 제19조의2)
- 사용료 또는 대부료 증가에 따른 감액조건 완화(안 제33조)
 - 100분의 10이상 → 100분의 5이상
- 변상금 징수유예 규정 신설(안 제61조의 2)
 - 징수유예 기간 및 징수유예 신청 및 처리절차

조 례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장 석 현

2014년 12월 30일

남동구 조례 제1215호

남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4항 후단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개정이유

-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수탁자의 의무 중 기부채납 의무 등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하여 수탁자의 부담을 경감 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수탁자의 의무중 신설 시설물 등 기부채납 의무 문구 삭제(안 제12조 제4항)

조 례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소래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장 석 현

2014년 12월 30일

남동구 조례 제1216호

남동구 남동소래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소래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관장”을 “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중 “관장”을 “구청장”으로 하며, 제2항 단서 중 “관장”을 “구청장”으로 한다.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관장”을 각각 “구청장”으로 한다.

제8조제1항제5호 및 제2항 중 “관장”을 각각 “구청장”으로 한다.

제9조제4항 중 “관장”을 “구청장”으로 한다.

제11조제3항 중 “관장”을 “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관장”을 “구청장”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관장”을 각각 “구청장”으로 한다.

제12조 전단 중 “관장”을 “구청장”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본문 중 “관장”을 “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및 제2항 전단 중 “관장”을 각각 “구청장”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본문 중 “관장”을 “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제3항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장”을 각각 “구청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관장”을 “구청장”으로 한다.

제15조의2 전단 중 “관장”을 “구청장”으로 한다.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장”을 “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관장”을 “구청장”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제2호, 제5호 및 제2항 중 “관장”을 각각 “구청장”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및 제2항 중 “관장”을 각각 “구청장”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관장”을 “구청장”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날로 부터 시행한다.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개정(2014.10.10.)에 의거
- 조직 개편에 따른 사업소 기구 폐지에 따라 남동소래아트홀 운영 조례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남동소래아트홀 관리 및 운영주체 변경 (안 제3조 ~ 19조)
 - 관장 → 구청장

조 례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창조경제 멘토서비스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장 석 현

2014년 12월 30일

남동구 조례 제1217호

남동구 창조경제 멘토서비스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장 총칙

제1조(목적) 조례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창조경제 멘토서비스 지원이라 함은 “기술·경영·마케팅 등 중소기업의 경영상 애로사항 등의 자문 및 지원”활동과 “일자리 창출 지원”을 말한다.

제3조(책임)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체가 애로사항 등의 해결을 위하여 서비스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지원사업 현장점검을 통해 매년 성과를 분석하여야 한다.

제2장 창조경제 멘토서비스 지원단 구성 및 운영

4조(설치) 남동구의 중소기업 경영 등 애로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창조경제 멘토서비스 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둔다.

제5조(기능) 지원단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소기업의 경영상 애로사항에 대한 자문 및 기술지원 등
2. 기술, 생산, 품질 등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지도
3. 인사, 노무, 기업문화 등 개선사업 지도
4. 유휴·전문 인력의 구인·구직 및 알선 서비스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원사업

제6조(구성) ① 지원단은 단장 1명, 부단장 1명을 두고 이를 포함한 100인 이내로 구성하며 필요시 초과 구성할 수 있다

② 단장은 단원 중에서 선출하며, 부단장은 단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지원단의 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은 제4항의 기준에 따라, 성별, 전문성, 근무경험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한다.

④ 단원 위촉 자격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전문직종 관련분야 10년 이상 근무경력자(퇴직자)
2. 전문직종 자격증 소지 후 5년 이상 해당 근무경력이 있는 자
3. 그 밖에 구청장이 해당경력을 인정하는 자

⑤ 지원단은 6개 분과로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조직구성 등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하여 운영한다.

제7조(단원의 임기) 단원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8조(단원의 선발) ① 단원 선발을 위한 세부기준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② 단원의 모집은 공개모집으로 하되, 공개 모집에 응모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창조경제 멘토 서비스지원단 참여 신청서(별지1호서식)
2. 창조경제 멘토 서비스단원 승낙(서약)서(별지2호서식)

제9조(지원단 활동제한사항) ① 이 조례에 근거하여 지원을 받는 단원은 순수

, 일자리 창출지원 활동에 국한한다.

② 이해 관계가 있는 기업이나, 이해 관계인을 위한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0조(단원의 해촉)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1. 단원이 스스로 사퇴한 경우
2. 질병, 사망 또는 기타 사유 등으로 지원단 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
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품위를 손상하였을 경우
4. 기업의 특허, 인증, 기술 등을 유출 또는 도용하여 기업과의 분쟁을 야기한 경우
5.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단 업무에 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1조(지원분야 및 지원기간) ① 지원단은 경영전략, 기술/생산/품질, 마케팅, 인사/노무, 자금/재무, 일자리 창출 등 분야별로 지원한다.

② 지원단의 지원 분야를 확대하여 지원 할 수 있다.

③ 지원은 1개 업체당 연 20일 이내 방문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상담지원 등도 가능하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예산지원 등) ① 구청장은 지원단 활동에 소요되는 물품 또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원단 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예산 범위내에서 지급 할 수 있다.

③ 실비지급 기준은 따로 정하여 운영한다.

제13조(운영보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중간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사업 완료 후에는 종합완료 보고를 하게 하여야 한다.

제3장 지원대상 업체선정 기준

제14조(대상) 인천광역시 남동구에 공장 및 본사가 소재한 중소기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15조(지원대상 업체선정 기준)

신청 희망업체로 하며, 선정은 다

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50인 이하 기업으로 경영의 효율화 및 경쟁력 또는 지원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되는 업체
2.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고용창출 효과가 큰 업체
3. 남동구에서 예비창업을 준비하는 자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제16조(선정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선정에서 제외한다.

1. 전년도를 포함하여 2년 연속하여 지원을 받은 업체
2. 완제품 개발이나 프로그램 성과품 제작 등 기술지도·자문에서 벗어난 사업을 요구하는 업체
3. 분야별 실현 곤란한 사항에 대한 멘토서비스 지원을 요구하는 업체
4.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업체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1호서식)

창조경제 멘토서비스 지원단 참여 신청서

접수번호				관리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E-mail		
멘토링 분야	☐ 경영전략 ☐ 기술/생산/품질 ☐ 마케팅 ☐ 인사/노무 ☐ 자금/재무 ☐ 기타				
멘토링 상세분야					
경 력 (주요경력 위주)	회사명	재직기간	직위	담당업무	
자격증	자격증명		취득일	취득기관	
최종학력					
활동비 입금 계좌번호 (추후기입)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개인정보 활용 동의>

본인은 위와 같이 창조경제 중소기업 멘토 참여를 신청하며, 위 기재한 개인정보를 멘토프로필 온라인등록, 활동비지급, 멘토링 실적관리 등을 위한 용도로 이용함에 동의합니다.

위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 필요시 신청자의 실무경력 또는 자격에 관한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이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성명	멘토링 상세분야		
업무경력 기술 (상세하게)			
활동계획 및 기대효과			

(별지2호서식)

『창조경제 멘토 서비스』 단원 위촉 승낙(서약)서

☐ 멘 토 분 야 :☐ 주민등록번호 :☐ 성 명 :

상기 본인은 인천광역시 남동구에서 시행하는 『창조경제 멘토서비스 지원단 운영』의 멘토서비스 단원으로 위촉됨을 승낙하며, 아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지도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 및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지 아니한다.
2. 기술지도와 관련하여 취득한 기술/지식을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 사용하지 아니한다.
3. 지도와 관련하여 위촉기간 내에 동일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 구에서 지급하는 활동비 외에 업체로부터 추가 이득을 취하지 아니한다.
4. 기술지도 중 발생한 지적재산권에 대한 권리는 기업이 단독 소유함을 원칙으로 한다.
5. 지도는 공정하고 성실하게 수행하여 기술 및 품질향상과 기업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한다.
6. 상기 내용 위반시 민·형사상 모든 책임부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년 월 일

위 본인 :

(인)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귀하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 전 구민에게 실질적 일자리 창출과 고용증대 방안의 실천기반 마련 인식
- 기업가의 사회적 관심 제고와 근로자의 일할 욕구 동기 부여로 상생 경제기반 구축과 신뢰 행정 구현
- 중소기업의 경영개선과 지원에 관한 적극적 처방과 대안 제시로 지역경제 기반 안정화 도모

□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용어정의, 책임(안 제1조, 제2조, 제3조)
- 창조경제 멘토서비스 지원단 구성 및 운영(안 제4조~제13조)
- 업체선정 기준 및 방법(안 제14조~제16조)

조 례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맑은터전 남동의제21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장 석 현

2014년 12월 30일

남동구 조례 제1218

남동구 맑은터전 남동의제21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맑은터전 남동의제21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6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주민·기업·구”를 “주민·기업”으로, “1인으로 구성된 3인”을 “1명으로 구성된 2명”으로, “선출하고, 구의 대표는 부구청장으로 한다”를 “선출한다”로 한다.

같은 항 제2호 중 “상임위원회의원 1인”을 “상임위원회위원 1명”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120인 이내로 ”를 “120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로 하

고, 같은 조 제2항 중 “3인”을 “2명”으로, “1인”을 “1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2인”을 “2명”으로 한다.

제8조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1인을 포함하여 20인”을 “1명을 포함하여 20명”으로, “구성하되”를 “구성하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1인을 두되”를 “1명을 두며”로 한다.

제11조제8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1인을 포함하여 30인”을 “1명을 포함하여 30명”으로, “구성하고”를 “구성하며”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구 청사 내에 상설사무국”을 “사무국”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구청장”을 각각 “유관기관의 장”으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를 “사항은 해당기관의 장에게 그 처리를 요청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유관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청 받은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또는 진행사항 등을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협의회는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기관,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관계기관 등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8조를 삭제한다.

제19조의 제목 “(경비의 지원)”을 “(사업비 및 운영경비의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같은 조 제2호 및 제1호로 한다.

제19조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22조 중 “환경정책”을 각각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환경정책에 대한 추진 사업”을 “사업”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 맑은터전 남동의제21실천협의회 운영상의 미비점 및 개선점을 보완·정비하여 민간 주도의 주민참여를 통한 지속적인 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주요내용

- 협의회 구성 관련 공동의장단 위촉 규정 개정 (안 제6조제1항제1호)
 - 주민·기업의 대표 각 1명으로 구성된 2명의 공동의장
- 성별영향분석평가 개선의견 반영 (안 제6조제1항제3호)
 - 위촉직위원 : 120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
- 사무국 설치·운영 규정 개정 (안 제13조제1항)
 - 구 청사 내에 상설사무국 설치 → 사무국 설치
- 위탁사무 범위 확대 (안 제21조)
 - 환경정책사업 → 지속가능한 발전 사업 전반
- 제15조와 제18조를 통합 → 제15조제3항 신설
-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 기타 → 그 밖에, 인 → 명

조 례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장 석 현

2014년 12월 30일

남동구 조례 제1219호

남동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에 따라 위임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의 지정 및 취소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자동차관리사업의 개선과 서비스 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관리사업”이란 「자동차관리법」 (이하 “법”이라한다) 제2조 제6호에 따른 자동차정비업, 자동차매매업, 해체재활용업을 말한다.
2. “모범사업자”란 제1호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자 중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이하“시행규칙”이라한다) 제117조의2 및 이 조례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로 지정받은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이하 "모범사업자"라 한다) 지정계획 수립시 구보 또는 관할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모범사업자의 지정 신청 등) ① 모범사업자로 지정을 받으려고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모범사업자 지정을 신청 받은 경우 시행규칙 [별표 21의4]에 따른 모범사업자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여 지정여부를 결정한다.

제5조(지정증의 발급 등) ① 구청장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모범사업자에 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모범사업자 지정증(이하 "지정증"이라 한다)을 발급하고, 별표에 따른 모범사업자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을 교부한다.

② 모범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표지판을 업체의 내부 또는 외부에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

③ 모범사업자는 상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제1항의 지정증 및 표지판을 구청장에게 반납하고 지정증 및 표지판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모범사업자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지정증 및 표지판을 재발급할 수 있다.

제6조(지정의 유효기간) 모범사업자의 지정은 지정일로부터 5년간 유효하며, 재지정을 받고자하는 자는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날 3개월 이내에 재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7조(지정의 취소 또는 반납 등) ① 구청장은 모범사업자로 지정된 자

가 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되거나 법 제66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며,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정증 및 표지판을 회수하여야 한다.

② 지정받은 모범사업자가 사업의 폐업, 양도하는 경우에는 지정증 및 표지판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8조(모범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 ① 구청장은 모범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모범사업자로 지정된 날부터 구청장이 정하는 기간까지 면제
2. 모범사업자 표지판 제작지원
3. 모범사업자 또는 종사자에 대한 구청장 포상
4. 구 홈페이지 등 홍보매체를 이용한 홍보지원

제9조(모범사업자 관리대장) 구청장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조례 시행 이전에 모범사업자로 지정 받은 사업자는 본 조례에 의거 모범사업자로 지정 받은 사업자로 본다.

[별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표지판(제4조 관련)

[별지 제1호 서식] 자동차관리사업모범사업자지정 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증

[별지 제3호 서식]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관리대장

[별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표지판(제4조 관련)

1. 규격 및 재질

가. 규격 : 50cm(가로)×30cm(세로)

나. 재질 : 스테인레스판 실크인쇄

2. 표지판 도안 등

가. 도 안

지정번호 :

지정년월일 :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상호 : _____

위 업소를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 및 「인천광역시남동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로 지정합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직인

나. 색상

○ 바탕 : 은회색

○ 글씨 : “자동차관리 모범사업자 상호명은 노랑색, 그 외는 흑색
다. 그 밖에 인천광역시남동구 상징 등의 문양을 넣을 수 있다.

[별지 제1호 서식]

인천광역시남동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재지정) 신청서				
관리사업 등록번호			연락처	
사 업 자	성명(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사업장)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2, 같은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 및 「인천광역시남동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남동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없음				

신청안내

신청하는 곳	인천광역시남동구청	처리 기간	30 일
수 수 료	없 음		

[별지 제2호 서식]

지정번호 : 제 호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증

- 업 체 명 :
- 대 표 자 :
- 소 재 지 :
- 업 종 :
- 유효기간 :

위 업소를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 및 「인천광역시남동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직인

[별지 제3호 서식]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관리대장

[illegible]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의 규정에 따라 위임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의 지정 및 취소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자동차관리사업의 개선과 서비스 수준향상 및 건전한 자동차관리문화 정착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모범사업자 지정계획 수립시 공고하도록 함(안 제2조)
- 모범사업자 지정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 모범사업자 지정증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 모범사업자에 대한 지원사항을 정함(안 제8조)
 - 법 제72조 제2항에 따른 검사를 모범사업자로 지정된 날부터 구청장이 정하는 기간까지 면제
 - 모범사업자 또는 종사자에 대한 구청장 포상
 - 모범사업자 표지판 제작 지원

조 례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장 석 현

2014년 12월 30일

남동구 조례 제1220호

남동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

남동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를 다음과 같이 전부 개정한다.

남동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5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남동구민의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평생교육에 필요한 기구의 설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문자해

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2.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란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구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되는 사업 간 조정 및 관계 기관과의 협력증진을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설치한 협의회를 말한다.

3. “평생학습관”이란 구청장이 평생교육 진흥 및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능력개발 등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4. “평생학습센터”란 구청장이 각 동별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담을 제공할 수 있도록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평생교육을 통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삶의 질 제고와 도시전체의 경쟁력 향상 및 배움과 나눔이 실천되는 평생교육도시 건설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이면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것을 배울 수 있도록 평생교육 정책개발과 조사·연구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는 등 평생 교육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경비보조 및 지원) 구청장은 평생학습의 진흥과 활성화를 위하여 학습참여자와 평생교육기관·단체와 시설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학습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장 평생교육협의회

제5조(설치) ① 평생교육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고 평생교육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남동구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에는 평생교육 기관·단체 간의 업무조정 및 협력증진과 각종 공모사업의 심사·선정 등을 추진하기 위해 평생교육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6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하고 구청장의 자문 역할을 수행한다.

1. 평생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2. 평생학습관 운영 및 평생교육 관련 단체·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평생교육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4. 평생학습센터의 설치 또는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평생교육에 관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올리는 사항

제7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및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의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주민생활국장, 인천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의 평생교육 담당 국·과장 중 1명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1명, 평생교육 전문가, 관할 지역 내 평생교육 관계기관의 운영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④ 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평생교육 업무담당부서의 장이 되며, 서기는 평생교육업무담당으로 한다.

제8조(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의장 등의 직무)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는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퇴한 때
2.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협의회 목적에 반하는 행위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때
4. 그 밖에 직무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제11조(회의 등)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1.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실무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①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평생교육기관(시설)과의 프로그램 개발 및 연계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기관(시설)과의 정보교류와 업무 조정이 필요한 사항
3. 평생교육관련 각종 공모사업 심사·선정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평생교육업무담당 부서장이 되고 위원은 평생교육 관계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실무책임자 중에서 협의회 의장이 위촉한다.

제13조(수당 등) 협의회 및 실무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남동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3장 평생학습관 등

제15조(평생학습관 등의 설치) 구청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평생학습관 등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할 수 있다.

제16조(평생학습관 기능)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정책 개발·연구 및 홍보
2.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운영
3. 평생교육 관련 정보의 수집·제공 및 상담
4.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운영 지원 및 관리
5. 강사 및 자원봉사자 인력관리 은행제 운영, 학습동아리의 육성·지원
6. 평생교육 관계자에 대한 교육 및 훈련
7. 평생교육 관련 기관·단체 및 구민과의 연계체계 구축
8. 소외계층에 대한 평생교육 진흥사업 및 문자해독 교육 지원
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7조(평생학습센터의 기능) 평생학습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동별 지역주민 맞춤형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2.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는 학습매니저와 강사 지원
3. 지역 네트워크 구축
4. 지역주민 평생학습 및 지역사회 참여 활동 상담 등

제18조(평생학습관 등의 운영) ① 구청장은 평생학습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관내 유관기관·단체·공공시설·교육기관 및 기타 시설 등을 본래의 용도나 본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소유자·관리자와 협의하여 평생학습 협력기관·시설로 지정하여 이용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평생학습관 등의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9조(운영요원 등) ① 평생학습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평생학습관장, 평생교육사 및 필요한 직원 등을 둘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은 구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평생교육업무담당부서의 장이 관장의 업무를 겸직하게 할 수 있다.

② 평생학습관에는 법 제26조에 따라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동 평생학습센터에 전문 인력 및 평생학습매니저를 양성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제20조(수강료 징수 등) ① 구청장은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수강생에게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수강료는 수익자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하며, 평생교육 강좌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부 강좌를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

제21조(개관 및 휴관) ①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제3조에 따른 공휴일
2. 구청장이 정하는 휴관일

② 평생학습관은 시설의 보수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휴관일 외에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임시 휴관을 할 수 있다.

제22조(학습자 안전 보험가입) 법 제28조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는 학습자에 발생한 생명상·신체상의 손해가 있을 경우 보상받을 수 있도록 보험이나 공제사업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23조(수료증 등 교부) 구청장은 인천광역시 남동구에서 인정하는 평생교육과정을 수료한 자에게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으며, 우수 수료자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24조(자원봉사자) 구청장은 평생학습관 등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모집·활용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 범위 안에서 교통비와 급량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평생교육 진흥과 관련하여 각 단체, 동아리 및 공공기관 등에 지원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연 1회 이상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경비 등을 지원받은 기관·단체는 구청장 자료요구나 지도·감독에 성실히 응해야 하며, 지도·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구청장은 기관·단체 등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4장 보칙

제26조(다른 조례의 준용)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 평생학습관 개관 · 운영 및 주민의 근거리 학습권 보장을 위한 동 평생학습센터의 운영 지원에 대한 제반 사항 등을 정하여 평생교육 진흥 및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능력개발 등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안 제2조)
 - 평생교육, 평생교육협의회, 평생학습관, 평생학습센터
- 평생학습에 대한 경비보조 및 지원에 관한 근거 마련(안 제4조)
 - 평생학습의 진흥과 활성화를 위한 학습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
- 평생학습관 · 평생학습센터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규정(안 제16조부터 제18조)
- 평생학습관 운영 관련 규정 신설(안 제20조부터 제22조)
 - 평생학습관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수강생에 대한 수강료 징수
 - 평생학습관 개관 및 휴관
 -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학습자에 대한 안전 보험 가입

조 례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장 석 현

2014년 12월 30일

남동구 조례 제1221호

남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전부개정한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같은법 시행령 및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의 제출서류 등) 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광고물 등”이라 한다)을 표시 또는 설치(이하“표시”라 한다)하기 위하여 허가 신청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7조제1

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원색 사진, 설명서 및 설계 도서를 제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다만, 영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은 제외한다.

1. 영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옥상간판 중 옥상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간판과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경우
2. 영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돌출간판 중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미만인 광고물로서 1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3. 영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 중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 미만인 경우
4.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표시하여 높이 4미터 미만인 경우
5. 영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6. 영 제4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선전탑
7. 그 밖에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 등

② 영 제7조제1항제4호에서“심의 관련 서류”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대상 광고물 등의 사전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말한다.

③ 영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구조안전 확인서류 제출대상 광고물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물의 옥상에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는 광고물 등 중 그 상단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옥상간판 및 애드벌룬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 등

제3조(허가 및 신고사항 기록·관리) ① 구청장은 영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광고물의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허가 및 신고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 또는 신고 사항에 대한 내용이 전산화된 경우에는 그 전산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영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라 현수막·벽보·전단의 신고를 수리하는 때에는 광고물의 우측 하단의 여백에 별지 제2호서식의 검인, 압인 또는 천공을 함으로써 신고필증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영 제7조 및 제10조에 따라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광고물 등의 표시기간 종료일 30일전까지 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게 표시기간 종료를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표시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4조(허가사항의 변경) 영 제9조제1항 단서 전단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 등 중 다음 각 호의 광고물 등을 제외하고는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타사광고(건물 등의 벽면을 이용하는 광고물 등과 옥상간판을 말한다)를 표시하는 광고물 등
2. 네온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
3.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 중 광고물 등의 규격, 사용자재, 표시 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

제5조(허가사항의 표시연장)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 등 중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그 표시기간을 연장하는 광고물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과 타사광고를 표시하는 광고물 등은 제외한다.

1.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이하 “시 조례”라 한다.) 제5조제4호에 따른 가로형 간판
2. 영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돌출간판

3. 영 제15조제4호나목에 따른 옥상간판과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옥상간판
4. 영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
5.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설치하는 경우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 등

제6조(표시방법 완화) ① 구청장은 영 제21조의 규정에 표시방법을 완화하기 위한 특정구역을 지정하려는 때에는 인천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과 사전협의를 거친 후 구보·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구 게시판 등에 14일 이상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하며, 그 구역 범위 또는 표시방법의 완화내용 등은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기 지정 고시된 지역은 별표 1과 같이 정한다.

② 법 제3조제4항 및 영 제21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그 주관으로 인천광역시 단위의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경우에 그 지원계획 지역 내에 설치하는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에 대한 의견제시와 특정구역을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특정구역 안에서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을 완화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건물에 표시할 수 있는 광고물 등의 총수량 및 업소별로 표시할 수 있는 광고물 등의 총수량
2. 광고물 등의 표시내용·종류·색깔·규격 및 모양
3. 표시위치 또는 장소
4.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

제7조(특구에서의 특례) ① 구청장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하 “법”이

라 한다) 제3조 및 제4조에도 불구하고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3조 및 제23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특화발전특구(이하“특구”라 한다)에서 특구의 홍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특구계획에 반영된 특구 및 특화사업 홍보를 위한 시설의 광고물 등은 영 제24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지역 및 장소에 별표 2와 같이 표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구 및 특화사업을 홍보하기 위한 광고물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영 제16조 및 시 조례 제10조에 불구하고 지주 이용 간판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표시해야 한다.

가. 간판의 윗부분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0미터를, 1면의 면적(간판이 입체형인 경우에는 가장 넓은 면의 단면적을 말한다)은 50제곱미터를, 간판면적의 합계면적은 150제곱미터를 각각 초과할 수 없다.

나.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갓길로부터 고속국도는 500미터 이상, 자동차 전용도로는 200미터 이상으로 하고, 그 밖의 도로는 30미터 이상을 이격하여야 한다.

2. 시 조례 제16조에 불구하고 선전탑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5미터 이내로 하며, 영 제8조제3호 관련 별표 2의 표시기간에 불구하고 30일을 초과하여 표시할 수 있다.

3. 광고물 등에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광원이 직접 노출 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되 빛이 점멸하지 아니하고 동영상 변화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8조(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대상) 영 제23조제1항제2호에서“조례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법」 제2조제2항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

제9조(자율관리협정) 영 제26조제2항에서“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한 사항으로

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자율관리협정의 승계,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광고물 등의 위치·모양·크기·색깔을 표시한 디자인 시안(試案)
3. 광고물 등의 유지·관리 및 감시활동계획
4. 자율관리협정의 이행을 위한 사업계획서
5. 그 밖에 구청장이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주민협의회) ① 영 제27조제3항제3호에 따라 조례에서 정하는 주민협의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관리협정의 변경 및 폐지의 결정
2. 자율관리구역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한 예산의 집행 및 정산
3. 그 밖에 구청장이 주민협의회의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영 제27조제4항에 따라 주민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협의회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한다.
 - 가. 당해 자율관리구역 내의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지상권자·임차권자
 - 나. 시민단체 및 옥외광고·디자인 관련 전문가
 - 다. 당해 지역의 구의회 의원
2. 주민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3. 주민협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4. 위원장은 주민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주민협의회를 소집한다.
5.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6. 주민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7. 그 밖에 주민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주민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③ 주민협의회는 자율관리협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유효 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영 제26조제2항 각 호의 자율관리협정을 체결하여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주민협의회는 그 대표자 및 위원, 자율관리협정 체결자의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변동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정비시범구역) 구청장은 영 제2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이하“정비시범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운영한다.

1. 수요조사를 거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목적, 명칭·위치 및 규모, 사업기간, 사업비 및 예산지원, 광고물 등의 디자인 등이 포함된 사업(이하 “정비시범사업”이라 한다) 계획을 수립한다.
2. 제1호에 따른 정비시범사업 계획은 정비시범구역 안의 주민을 대상으로 15일 이상 공람을 하여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3. 제2호에 따른 의견수렴 절차가 끝나면 시장과 사전협의를 거친 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고시하여야 한다.
4. 정비시범사업이 종료한 후에는 광고물 등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민협의회를 구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민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은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5. 그 밖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할 수 있다.

제12조(정비 등 지원) ① 구청장은 정비시범구역에서 광고물 등을 정비하는 자에게 정비에 소요되는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법 제5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을 준수하고 광고

산업 발전에 기여한 광고업자에 대해서는 우수광고업자로 지정하는 등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법 제5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질적 향상과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광고물 등의 공동 제작 및 디자인 향상을 위한 작업장 등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외국어 병기) ① 구청장은 법 제5조의2제5항에 따라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의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 등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광고물 등을 표시하려면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글과 외국어를 함께 표기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건물면적으로 제한하여 고시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물면적으로 제한하는 구역의 범위
2. 광고물 등의 디자인
3. 그 밖에 한글과 외국어를 함께 표기하는데 필요한 사항

제14조(광고물관리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영 제32조제2항에 따른 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계획·건축·디자인·청소년 등 광고물 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국어·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계획·건축·디자인·청소년 등 광고물 등 관련분야 전문가
3. 그 밖에 광고물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② 영 제32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소위원회 위원장은 옥외광고업무 담당부서장으로 한다.

2. 소위원회는 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3명 이상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 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하고, 여성이 1인 이상이 포함되도록 한다.
3. 소위원회 위원은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4. 소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① 영 제33조제2호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하거나 심의를 부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과 영에서 규정한 사항과 시 조례 및 이 조례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2. 높이 4미터 이상인 옥상간판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3. 표시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4. 1면의 표시면적이 10제곱미터 이상의 네온류 및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5. 건물 2층 이상의 유리벽면에 표시되는 가로형간판 및 세로형간판 등
6. 그 밖에 구청장이 광고물 등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한 사항

② 소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게 하거나 심의를 부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의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는 사항
2. 그 밖에 구청장이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하는 사항

③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 등을 위하여 이메일, 서면, 화상회의 등의 방법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제1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전문가·이해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심의안건의 제출방법, 심의기준 등 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영 제38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 사무소의 등록을 한 사람
2.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관련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3. 「국가기술자격법」(「자격기본법」 제17조에 따라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 자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옥외광고·건축·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4. 영 제2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된 사항과 동등한 안전점검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

제17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시설기준 등) 영 제38조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원의 자격 및 인원을 갖추어야 하며, 구청장은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사무실
2. 작업차량, 사다리, 절연저항계, 카메라, 망원경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옥외광고·건축·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분야별로 1인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4.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점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시설 또는 장비

제18조(안전점검 업무의 위탁절차 등) ① 구청장은 제16조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중에서 하나 이상을 지정하여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받

을 수 있는 자의 자격, 위탁기간, 위탁받을 자의 임무,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위탁지정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위탁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⑥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위탁받은 자의 명칭 및 위탁기간 등을 고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검사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19조(안전점검의 절차 및 검사요령 등) ① 구청장은 안전점검을 별지 제6호서식의 안전점검 검사서에 따라 점검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별지 제7호서식의 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안전점검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공무원을 검사공무원으로 지정하여 직접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영 제37조제1항에 규정한 안전점검의 기준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검사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면서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구청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시정조치 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결과를 접수하여 광고물 등이 안전점검에 합격한 때에는 영 제37조제4항의 안전점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20조(공공게시시설 관리의 위탁) ① 구청장은 시 조례 제12조 및 제14조에 따라 설치된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시민게시판(이하“공공게시시설”이라 한다)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공공게시시설의 관리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법인, 단체 또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관리공단에 공공게시 시설을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공공게시시설의 관리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요건·시설기준·선정방법, 공공게시시설의 명칭수량, 위탁기간 및 위탁받은 자(이하“수탁자”라 한다)의 임무 등 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공공게시시설의 관리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공고 기간 내에 별지 8호 서식의 위탁지정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공공게시시설 관리 위탁자를 선정하였을 때에는 위탁자의 명칭, 대표자 성명, 영업장 주소, 위탁한 내용, 위탁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하며, 위탁자에게 별지9호 서식의 위탁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⑤ 공공게시시설 관리 수탁자는 공공게시시설에 게시할 광고물의 신고 대행 및 신고 된 광고물의 게시와 제거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공공게시시설 이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공공게시시설의 위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1조(제거된 광고물 등의 관리 등) ① 구청장은 영 제40조에 따라 광고물 등을 제거한 경우에는 그 광고물 등이 있던 곳에 제거한 취지와 그 광고물 등의 보관 장소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표시하기 곤란한 광고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영 제40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류 및 수량

2. 표시 내용

3. 위반 장소 및 위치

4. 제거한 시간, 보관 장소 및 담당자 등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광고물 등을 보관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비치하여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영 제41조에 따라 광고물 등을 반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다.

제22조(정비·수거된 현수막, 벽보, 전단에 대한 보상) ① 구청장은 현수막, 벽보, 전단(이하 이 조에서“현수막 등”이라 한다)을 구에 주소를 둔 주민 및 단체에서(이하 조에서“주민 등”이라 한다.) 정비·수거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 3의 지급 기준에 의거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주민 등이 제1항의 현수막 등의 정비·수거에 참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청장이 수립하여 시행하는 정비계획에 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보상금 지급한도는 1개 단체 또는 1인당 각 월 30만원 이하로 하며, 월 지급한도를 초과하는 신청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구청장은 보상금 지급신청에 대하여 별지 제12호서식의 「불법옥외유동광고물 정비보상금 신청 및 지급대장」에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⑤ 현수막 등을 정비·수거한 자가 광고물과 별지 제13호 서식 및 별지 제14호 서식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보상금 지급을 요구 할 때에는 구청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상금을 신청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한다. 이 경우 정비·수거한 주민 등의 통장계좌로 지급한다.

제23조(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영 제43조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24조(옥외광고업의 등록 관리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옥

외광고업자가 옥외광고업을 폐업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 사실을 안 날부터 7일 이내에 폐업한 사실을 현지 확인하고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한다.

② 법 제11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옥외광고업자가 영업소 안에 비치 또는 표시하여야 하는 장부 및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지 제15호서식의 옥외광고물 등 관리대장
2. 영 제44조제5항의 옥외광고업 등록증(영업소를 방문하는 자가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3. 별지 제16호서식의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 교육수료 필증

제25조(옥외광고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 ① 구청장은 영 제49조제2항에 따른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별표 5와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매년 12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다음 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1. 교육의 종류별 실시시기 · 내용 · 시간 및 장소
2. 교육 대상자
3. 교육 실시방법 · 절차 및 비용
4.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교육을 실시하기 15일 전까지 교육대상자를 확정하여 개별통지를 하여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보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영 제4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신규로 옥외광고업에 종사하려는 자는 제3항에 불구하고 구청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교육수료 필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17호서식의 교육이수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⑥ 구청장은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교육을 받는 자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⑦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8호 서식의 교육 불참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때
2.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구속 중일 때
3. 「향토예비군법」 및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교육훈련기간과 중복된 때
4. 그 밖에 관혼상제, 재해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때

제26조(교육의 위탁 등) ① 구청장은 영 제50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기간,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임무,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하며,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교육위탁지정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자로 위탁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교육위탁 지정서를 교부하고, 위탁받은 자의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위탁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교육의 위탁기간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25조제2항에 규정한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12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교육을 위탁받은 자가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제25조제5항의 교육이수대장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고, 구청장은 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교육수료 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⑥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5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교육을 받는 자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제25조제2항제3호에 따라 그

금액과 산출근거를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⑦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5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한 후에 그 교육실시 결과, 교육비용의 수납 및 집행내역 등을 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⑧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7항에 불구하고 법 제11조의4에 따른 한국옥외광고센터에서 개설한 사이버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본다.

제27조(수수료) ①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 등의 표시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는 별표6과 같다.
2.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수수료는 별표 7과 같다.
3.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옥외광고업 등록 수수료는 별표 8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이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한 경우의 안전점검 수수료는 안전점검 수탁자가 정한 방법에 따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 등에 대하여는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구청장이 광고물 등의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구제 절차를 시행하는 경우
2. 법령의 개정으로 이미 표시된 광고물 등이 새로이 허가 또는 신고대상으로 분류된 경우
3. 시민게시판에 게시되는 벽보와 현수막 지정게시대에 게시하는 현수막 중 목격자 찾기, 미아 찾기, 산업체 구인벽보 및 그 밖에 공공의 목적을 위한 내용으로서 구청장이 인정하는 벽보와 현수막
4. 허가 또는 신고의 수리(허가 또는 신고수리의 거부를 포함한다)전에 신청인이 취하원을 제출하여 취하 처리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동일한 사항

을 다시 신청 또는 신고하는 광고물 등(이미 납부한 수수료 금액에 한한다)

제28조(사용료) 구청장은 「지방자치법」 제136조에 따라 공공게시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별표 9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 할 수 있다. 다만 제20조에 따라 공공게시시설을 위탁한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징수한다.

제2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영 제55조에 따른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표시되었거나 허가증 및 신고필증이 교부된 광고물 등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광고물 등의 표시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른 업무수탁자, 관리수탁자, 교육수탁자는 각각 이 조례에 따른 수탁자로 보며, 그 위탁기간은 계속된다.

③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이 처분한 사항과 처분 중인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제3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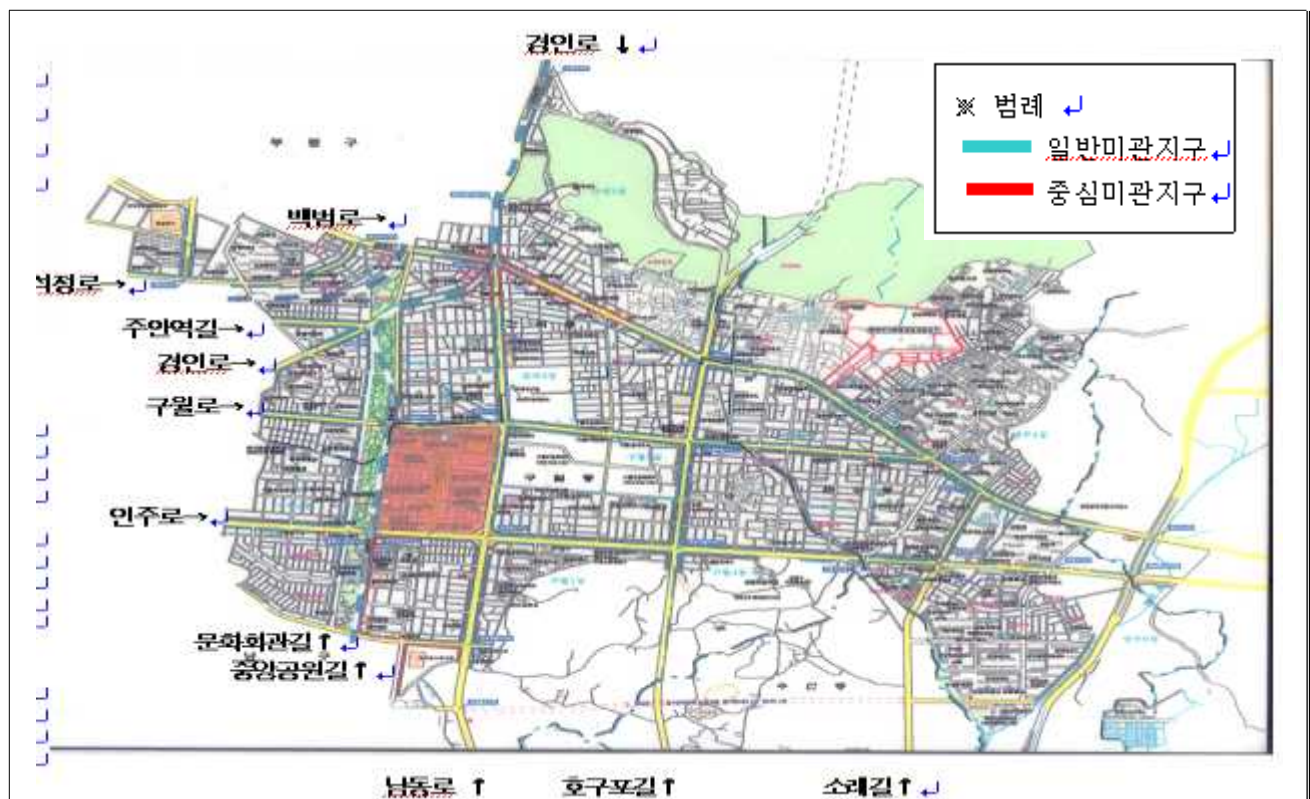
옥외광고물등의 특정구역 지정현황 및 표시방법(제6조제1항 관련)

1. 특정구역 지정현황

i) 주요간선도로변 미관지구

※ 도로양쪽에 접하는 미관지구 내 토지와 건물에 적용함.

도 로 명	기 점	종 점	거 리(km)	비 고
인주로	장수동 산83-4 (치아고개 삼거리)	구월동 1120 (주안4동 경계)	5.88	
구월로	만수동 990 (만수주공 사거리)	구월동 925 (주안6동 경계)	3.41	
백범로	운연동 60-10 (인천시 시경계)	간석동 449-5 (십정2동 경계)	7.10	
경인로	간석동 520-3 (남인천전화국)	간석동 768-5 (부평사거리)	2.55	
남동로	구월동 859-1 (남동경찰서 사거리)	간석동 215-1 (간석오거리)	2.67	
중앙공원길	구월동 1408-2 (신세계백화점 사거리)	간석동 395-7 (주원삼거리)	2.32	
문화회관길	구월동 1408-2 (예술회관주차장)	간석동 524 (수림공원 앞 사거리)	2.15	
호구포길	구월동 551-7 (초도노인요양원 입구)	간석동 86-12 (만월터널 입구)	1.95	
소래길	만수동 321-7 (남동구청 정문입구)	만수동 386-2 (만수사거리)	0.90	
석정로	간석동 613-6 (벽돌막 사거리)	간석동 616-98 (현광아파트 앞 사거리)	1.26	
주안역길	간석동 524 (수림공원 앞 사거리)	간석동 395-27 (주안6동 경계)	0.50	
11개소	총 계		30.69km	



※ 지구내 도로양쪽에 접하는 업무용 토지 및 건물에 적용함.

※ 해당지번 토지와 건물에 적용함

- 62 -

채바탕색의 50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법령에 따라 상표등록 또는 디자인등록을 받은 광고물 등의 색상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신고배제 광고물의 경우에도 업소별 광고물 등의 총수량, 크기, 표시방법 등에 대한 제한사항은 이 표시방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⑤ 모든 광고물은 부착할 벽면 또는 지주 등에 고정시켜 표시하여야 하며, 자연력에 의하거나 인위적인 방법과 전기 등을 이용한 회전형 광고물과 애드벌룬 등을 특정구역 내에 표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⑥ 업소광고물 중 1개 이상의 간판에는 영문 등 외국어를 병기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나. 가로형 간판의 표시 제한

① 가로형 간판은 1개 업소에서 1개를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업소의 2면 이상으로 도로에 접한 업소의 경우에는 도로변을 향한 업소의 상단 벽면에 각각 표시할 수 있다.

② 건물정면 1층에는 가로형 간판을 판류, 복합형(판류+입체형), 입체형(글자형을 직접 벽면이나 게시시설을 이용하여 부착하여 표시하는 광고물)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2층 이상에는 복합형 또는 입체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단, 준공 후 5년 이상 경과한 건물의 3층 이하에는 벽면의 경관, 안전 등의 유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판류형 간판을 설치할 수 있다.

③ 1개 업소의 상단 벽면에는 1개 업소의 광고내용을 표시하여야 하며, 당해업소와 관련이 없는 2개 업소 이상의 간판 또는 광고내용을 연립하여 표시할 수 없다.

④ 가로형 간판의 가로길이는 15미터 이내로 당해 업소의 상단 벽면에 표시하여야 하며, 세로길이는 판류형의 경우에는 1미터 이내로 하고, 입체형의 경우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문자의 세로크기 이내로 한다. 다만 위층과 아래층의 창문간 벽면을 초과할 수 없다.

⑤ 판류형 간판 내에 표시하는 문자와 입체형으로 표시하는 문자의 세로크기는 건물층수에 따라 1층은 50센티미터 이내로 하고, 2층 이상은 아래 계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크기 이내로 한다. 다만 건물의 상단에 표시하는 입체형간판의 세로크기는 벽면폭 이내로 한다.

(2층 이상 표시문자 세로크기 계산식)

$50\text{cm} + (\text{해당층수} - 1) \times 5\text{cm}$ 이내

⑥ 광고표시내용에는 상표 등의 도형을 병행하여 표시하여야 하며, 표시형태는

자유로이 하되 미풍양속 및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에 저해되지 않아야 한다.

다. 돌출 간판의 표시 제한

- ① 가로형 간판을 표시하지 못한 업소가 우선하여 설치하며 1개 업소에서 1개를 표시할 수 있다.
- ② 돌출간판의 표시는 도로에 접한 건물의 정면 양쪽 모서리에 상하로 일직선상에 위치하도록 돌출간판 게시시설을 이용하거나 직접 벽면에 표시하여야 하며, 건물 모서리에 직각 등의 형태로 인접하여 2줄 이상의 돌출간판을 표시할 수 없다. 다만 건물 폭이 10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건물 모서리 중 1개소에 표시하여야 한다.
- ③ 돌출 간판의 최하단은 지면으로부터 5미터 이상 높이에 위치하도록 표시하여야 하며, 최상단은 지면으로부터 30미터 미만으로 하되 벽면 모서리의 최상단을 초과할 수 없다.
- ④ 돌출 간판의 바깥쪽 끝부분은 벽면으로부터 1.2미터 이내로 설치하여야 하며 1면의 면적은 업소 당 2평방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건물전체를 사용하고 있는 업소의 경우에는 1면의 면적을 5평방미터 이내로 표시할 수 있다.

라. 지주이용간판의 표시방법 제한

- ① 지주이용간판은 연립형으로 업소 당 표시면적을 균등하게 배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건물전체를 사용하는 업소는 단독으로 표시할 수 있다.
- ② 미관지구에 표시하는 지주이용간판은 중심미관지구는 2미터(11층이상 건물은 3미터), 일반미관지구는 2미터를 도로경계선으로부터 가각 이격하여 표시하여야 하며 간판의 최상단 높이는 5미터 이내로 표시하여야 한다.
- ③ 지주이용간판 1면의 총 표시면적은 연립형의 경우는 6평방미터 이내로, 단독형의 경우는 3평방미터 이내로 판류형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선전탑과 유사한 기둥형태(사각기둥, 원기둥, 삼각기둥 등)의 입체형 지주이용간판은 표시할 수 없다.
- ④ 지주이용간판의 광고내용 표시면은 건물벽면과 일직선 또는 평행한 형태로 표시하여야 하며, 간판의 돌출부분은 건축선으로부터 일반지역은 50센티미터 이상, 미관지구는 2미터 이상 일정한 거리를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마. 창문이용광고물 표시방법 제한

- ① 종이, 시트지 등 창문면에서 돌출되지 아니하도록 접착식 광고물로 표시하여야 하며, 문자의 세로 크기는 1층은 30센티미터 이내로 하고, 2층 이상은 아래 계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크기 이내로 표시한다.

$$(2\text{층 이상 표시문자 세로크기 계산식})$$

$$30\text{cm} + (\text{해당층수}-1) \times 5\text{cm} \text{ 이내}$$

- ② 제1항에 의한 문자 등의 광고내용은 가로쓰기 형태로 1줄로 표시하여야 한다.

바. 전기이용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 제한

- ① 전기이용광고물 중 LED(발광다이오드) 조명은 커버를 씌워 간접조명으로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점멸 또는 화면을 변화시킬 경우 문자 또는 도형이 점멸·변화 후 5초 이내에 다른 문자 또는 도형을 점멸·변화시킬 수 없다.
- ② 전기이용광고물 중 전자식발광 또는 화면변환의 특성을 이용하여 표시내용이 수시로 변화하면서 영상으로 나타내는 표시면적 5평방미터 이상인 광고물로 건물의 옥상, 상단, 측면에 표시하는 경우(이하 “영상전광판”이라 한다)에는 이웃한 영상전광판과 수평거리는 350미터 이상을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의 영상전광판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설치계획 및 영상전광판의 표출내용을 첨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심의하는 영상전광판의 설치계획이 도시경관 또는 공익상 적합한 지를 검토하여 의견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사. 그 밖의 표시제한 배제 광고물 등

- ① 이 표시방법 제한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받았거나 구청장이 시행하는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지구내의 광고물 표시계획에 의한 광고물 등의 경우에는 제한하지 아니한다.
- ② 병·의원, 주유소 및 가스충전소 등에서 표시하는 광고물 등과 그 밖의 이 표시방법에서 제한하지 아니한 광고물 등의 설치 및 표시방법은 옥외광고물 등 관련법령과 조례에 따른다.

2) 광고물 등의 표시완화 사항**가. 광고물 등의 일반적 표시방법 완화**

- ① 가로형 간판은 입체형 또는 복합형으로 5층 이하로 표시할 수 있다. 다만, 건물의 상단 중 3면에 표시하는 광고물, 건물의 측면 또는 후면의 4층 이상 벽면에 표시하는 광고물, 간판시범거리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의 계획에 의한 광고물,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표시하는 광고물 등은 당해 광고물 등에 적용되는 각각의 법규, 계획, 심의결과 등에 의하여 표시할 수 있다.
- ② 건물의 주출입구 상단 벽면에는 건물명 또는 가로간판을 표시하지 아니한 업소명을 입체형으로 표시할 수 있다.
- ③ 1면의 지름이 60센티미터 이하, 두께 20센티미터 이하의 업소를 상징하는 작은 예술적 조형물 형태로써 구에서 권장하는 표시방법 및 디자인에 적합한 소형 돌출간판은 2층 이하의 당해업소 상단 벽면에 설치할 수 있다.
- ④ 이 표시방법에서 정한 기준 및 관계법령과 조례에 의한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 제한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받았거나 구청장이 시행하는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지구 내의 광고물 표시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 심의결과 또는 광고물 표시계획에 따라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나. 광고물 심의위원회의 운영

- ① 위원회의 심의 및 승인을 받아서 표시할 수 있는 광고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기등을 이용한 회전형 광고물, 영상전광판
 2. 건물별 광고물 표시 계획
 3. 이 표시방법에서 정한 기준에 의한 광고물의 표시가 매우 불합리함을 주장하여 심의를 요청하는 광고물
 4. 구청장이 도시미관유지를 위하여 광고물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광고물
 5. 그 밖의 법령과 조례에서 광고물 심의대상으로 지정한 광고물
- ② 제1항의 심의대상 광고물 중 같은 건물에 표시하는 광고물로 모양, 크기, 표시위치, 재질, 구조 등이 유사하고 같은 건물에 표시하는 광고물은 종전의 심의사례가 있을 경우 심의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표시하게 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의한 광고물심의를 함에 있어 조례 제6조제2항 및 제19조에서 정한 표시방법의 제한범위와 완화범위를 초과하여 심의할 수 없다.

다. 건물별 광고물 표시계획 심의제

- ① 특정구역 내 광고물 표시기준 완화를 받고자 하는 자는 건물별 광고물 표시종합계획을 수립하여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 동의서와 함께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건물별 광고물 표시계획의 심의 신청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정구역 기준에 따르면 광고물의 표시가 불가능할 경우
2. 광고물에 대한 별도의 종합적 표시계획으로 특정구역 표시기준보다 건물과 광고물의 경관을 더 조화롭고 아름답게 조성하고자 할 경우

③ 구청장은 위원회에서 위 제1항의 건물별 광고물 표시계획 심의신청에 대하여 광고물의 심미성, 안전성, 건물 및 도시경관과의 조화 등을 심의하여 별도의 표시방법을 의결한 경우 이를 표시하게 할 수 있다.

3) 광고물 등의 표시를 권장하는 사항

① 지역 내 많은 외국인들의 유입에 따라 외국인 고객유치를 위한 영어 등 국제 공용어 또는 다른 외국어를 한글과 병기하도록 한다.

② 신축건물의 분양사업자 또는 임대사업자는 특정구역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을 분양(임대)계약서 내에 명시하거나 별도의 안내문으로 입점자에게 배부하여 특정구역 광고물 등의 표기기준을 준수하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4) 광고물 심의개최 및 법령 등의 적용

① 이 기준에서 제한 또는 완화하지 아니한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에 대하여는 옥외광고물 등 관련법령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② 특정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지구단위 사업계획구역의 광고물 표시기준은 이 표시방법에 따른다.

③ 특정구역 내 건물별 광고물 표시계획 심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홀수 월에 실시하며, 다른 광고물 심의위원회가 개최된 때에는 병합하여 심의할 수 있다.

5) 기존고시에 대한 경과조치

① 종전의 남동구 고시 제2007-23호, 남동구 고시 제2008-8호, 남동구 고시 제2008-36호, 남동구 고시 제2009-4호로 지정 고시되었거나 이 조례 시행 이후 남동구 관내에서 지정하는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내에서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② 이 표시방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설치 또는 표시되었거나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필증 또는 신고필증이 교부된 광고물 등은 이 표시방법에도 불구하고 당해광고물의 표시기간 동안 이를 설치·표시할 수 있다. 다만 표시기간이 만료되고, 이 조례에서 정한 표시방법기준에 부적합한 광고물은 표시기간을 1회에 한하여 당해 광고물의 표시기간 만료일로부터 1년 이내로 연장하여 표시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의한 종전의 남동구 고시 또는 제2항에 의하여 당해 광고물의 표시기간 만료 후 표시기간이 연장된 광고물 등은 연장기간 만료 후에는 이 조례에 의한 표시방법에 적합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별표 2]

특구 홍보용 광고물 표시 현황(제7조제1항 관련)

등	개수 (면수)	규격(m) (가로×세로×높이)	주 소	이격거리

[별표 3]

정비·수거된 현수막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제22조제1항 관련)**I. 보상금 지급기준**

종류	면적(크기)	기준	지급액	비 고
현수막	대형(5㎡이상)	1면	1,000원	
	소형(5㎡미만)	1면	500원	
	족자, 깃발형 현수막	1면	300원	
벽 보·전 단	20cm×55cm이하	500매	3,000원	
음란, 퇴폐성 청소년유해광고물	20cm 이하	500매	2,000원	

※ 매월 1인당 지급 최고한도액 : 200,000원

II. 보상금 신청요건

1. 수거대상 지역 : 남동구 전지역
2. 수거보상 신청자격 : 남동구에 거주하는(주민등록된) 주민 및 등록단체
3. 보상대상 유동광고물

수 거 보 상 대 상	제 외 대 상
• 우리구 관내 현수막 지정게시대 외의 장소(전주·가로수·가로등주, 건물벽면, 도로휨스 등)에 걸린 불법 현수막 • 도로 시설물에 부착된 불법 벽보(건물벽면 포함) • 도로 등에 살포된 불법 명함식 전단(불법대출, 음란성광고 등)	• 구 지정게시대·게시판 부착 광고물 • 부착되지 않았던 현수막·벽보 • 행정용·선거용·기타 협의된 광고물 • 형체와 매수의 구분이 불가능한 광고물 • 아파트 현관 내부 부착광고물 • 신문지 전단지 • 타 구지역 배포 광고물

4. 보상금 신청

가. 신청기간 : 구청장이 수립한 정비계획에 의함

나. 접 수 처 : 남동구 도시경관과

다. 지 참 물 : 신분증, 통장사본, 사진자료(현수막의 경우에 한함), 수거광고물

5. 보상금지급 : 지급기준에 따라, 매월 말 정산하여 다음 달 15일까지 신청인 은행계좌로 지급

[별표 4]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제23조 관련)

	이행강제금	비 고
가. 가로형 간판, 세로형 간판 및 공연간판		
1) 면적 5㎡ 미만		
- 2.0㎡ 이하	20만원	
- 2.0㎡ 초과 3.0㎡ 이하	30만원	
- 3.0㎡ 초과 4.0㎡ 이하	40만원	
- 4.0㎡ 초과 5.0㎡ 미만	45만원	
2) 면적 5㎡ 이상 10㎡ 미만		
- 5.0㎡ 이상 6.0㎡ 이하	55만원	
- 6.0㎡ 초과 7.0㎡ 이하	65만원	
- 7.0㎡ 초과 8.0㎡ 이하	75만원	
- 8.0㎡ 초과 9.0㎡ 이하	85만원	
- 9.0㎡ 초과 10.0㎡ 미만	95만원	
3) 면적 10㎡ 이상 20㎡ 미만		
- 10.0㎡ 이상 12.0㎡ 이하	110만원	
- 12.0㎡ 초과 14.0㎡ 이하	130만원	
- 14.0㎡ 초과 16.0㎡ 이하	145만원	
- 16.0㎡ 초과 18.0㎡ 이하	165만원	
- 18.0㎡ 초과 20.0㎡ 미만	185만원	
4) 면적 20㎡ 이상	200만원+ 면적 20㎡를 초과하 는 면적의 1㎡당 10만원을 더 한 금액 미만	
나. 돌출간판		
1) 연면적 5㎡ 미만		
- 2.0㎡ 이하	20만원	
- 2.0㎡ 초과 3.0㎡ 이하	30만원	
- 3.0㎡ 초과 4.0㎡ 이하	40만원	
- 4.0㎡ 초과 5.0㎡ 미만	49만원	
2) 연면적 5㎡ 이상 10㎡ 미만		
- 5.0㎡ 이상 6.0㎡ 이하	55만원	

- 6.0 초과 7.0㎡ 이하	65만원
- 7.0㎡ 초과 8.0㎡ 이하	75만원
- 8.0㎡ 초과 9.0㎡ 이하	85만원
- 9.0㎡ 초과 10.0㎡ 미만	95만원
3) 연면적 10㎡ 이상 20㎡ 미만	
- 10.0㎡ 이상 12.0㎡ 이하	110만원
- 12.0㎡ 초과 14.0㎡ 이하	130만원
- 14.0㎡ 초과 16.0㎡ 이하	150만원
- 16.0㎡ 초과 18.0㎡ 이하	170만원
- 18.0㎡ 초과 20.0㎡ 미만	190만원
4) 연면적 20㎡ 이상	200만원+ 연면적 20㎡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미만

다. 지주 이용 간판 및 지면에 설치하는 애드벌룬

1) 연면적 3㎡ 미만	
- 0.5㎡ 이하	30만원
- 0.5㎡ 초과 1.0㎡ 이하	35만원
- 1.0㎡ 초과 2.0㎡ 이하	40만원
- 2.0㎡ 초과 3.0㎡ 미만	48만원
2) 연면적 3㎡ 이상 5㎡ 미만	
- 3.0㎡ 이상 3.5㎡ 이하	55만원
- 3.5㎡ 초과 4.0㎡ 이하	65만원
- 4.0㎡ 초과 4.5㎡ 이하	80만원
- 4.5㎡ 초과 5.0㎡ 미만	95만원
3) 연면적 5㎡ 이상 10㎡ 미만	
- 5.0㎡ 이상 6.0㎡ 이하	110만원
- 6.0㎡ 초과 7.0㎡ 이하	130만원
- 7.0㎡ 초과 8.0㎡ 이하	150만원
- 8.0㎡ 초과 9.0㎡ 이하	170만원
- 9.0㎡ 초과 10.0㎡ 미만	190만원
4) 연면적 10㎡ 이상	200만원+ 연면적 10㎡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미만

라. 옥상간판,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애드벌룬 및 건물 4층

벽면에 표시하는 가로형 간판		
1) 연면적 5㎡ 미만		
- 2.0㎡ 이하	30만원	
- 2.0㎡ 초과 3.0㎡ 이하	35만원	
- 3.0㎡ 초과 4.0㎡ 이하	40만원	
- 4.0㎡ 초과 5.0㎡ 미만	48만원	
2) 연면적 5㎡ 이상 10㎡ 미만		
- 5.0㎡ 이상 6.0㎡ 이하	55만원	
- 6.0㎡ 초과 7.0㎡ 이하	65만원	
- 7.0㎡ 초과 8.0㎡ 이하	75만원	
- 8.0㎡ 초과 9.0㎡ 이하	85만원	
- 9.0㎡ 초과 10.0㎡ 미만	95만원	
3) 연면적 10㎡ 이상 20㎡ 미만		
- 10.0㎡ 이상 12.0㎡ 이하	110만원	
- 12.0㎡ 초과 14.0㎡ 이하	130만원	
- 14.0㎡ 초과 16.0㎡ 이하	150만원	
- 16.0㎡ 초과 18.0㎡ 이하	170만원	
- 18.0㎡ 초과 20.0㎡ 미만	190만원	
4) 연면적 20㎡ 이상 50㎡ 미만		
- 20.0㎡ 이상 21.0㎡ 이하	210만원	
- 21.0㎡ 초과 30.0㎡ 이하	230만원	
- 30.0㎡ 초과 35.0㎡ 이하	245만원	
- 35.0㎡ 초과 40.0㎡ 이하	260만원	
- 40.0㎡ 초과 45.0㎡ 이하	280만원	
- 45.0㎡ 초과 50.0㎡ 미만	290만원	
5) 연면적 50㎡ 이상	300만원 + 연면적 50㎡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미만	
마. 선전탑, 아치광고물 및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1) 선전탑, 아치광고물		
- 연면적 5㎡ 이하	30만원	
- 연면적 5㎡ 초과 10㎡ 이하	50만원	
- 연면적 10㎡ 초과 15㎡ 이하	60만원	
- 연면적 15㎡ 초과 20㎡ 이하	70만원	
- 연면적 20㎡ 초과	70만원 + 연면적 21㎡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5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2) 띄우는 애드벌룬		
- 애드벌룬(공) 1개	30만원	
- 애드벌룬(공) 2개	60만원	
- 애드벌룬(공) 3개 이상	80만원+ 3개를 초과하는 애드벌룬 1개당 5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바.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1) 시계탑·조명탑·안내탑·일기 예보탑		
- 연면적 5㎡ 이하	30만원	
- 연면적 5㎡ 초과 10㎡ 이하	50만원	
- 연면적 10㎡ 초과 15㎡ 이하	60만원	
- 연면적 15㎡ 초과 20㎡ 이하	70만원	
- 연면적 20㎡ 초과	80만원+ 연면적 21㎡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5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2) 교통안내소	가로형 간판에 준함	
3) 안내게시판·지정벽보판·버 스승강장·택시승강장·관광 안내도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4) 시 조례에서 인정한 편익시설물	비슷한 유형의 광고물 등에 준함	
사.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비슷한 유형의 광고물 등에 준함	
아.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1) 비행선		
- 연면적 10㎡ 이하	150만원	
- 연면적 10㎡ 초과	150만원+ 연면적 11㎡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2) 밖의 교통수단		
가) 연면적 3㎡ 미만		
- 1.0㎡ 이하	10만원	
- 1.0㎡ 초과 2.0㎡ 이하	20만원	
- 2.0㎡ 초과 3.0㎡ 미만	29만원	
나) 연면적 3㎡ 이상 5㎡ 미만		
- 3.0㎡ 이상 4.0㎡ 이하	35만원	
- 4.0㎡ 초과 5.0㎡ 미만	45만원	
다) 연면적 5㎡ 이상	50만원+ 연면적 5㎡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5만원을 더한 금액 미만	
자. 그 밖의 유형의 광고물		

비고 :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의 계산방법

- 이행강제금은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면적을 산정할 때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틀(광고물의 테두리)은 포함한다.
-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계산한 단위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 입체형·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최대 외곽선을 사각형으로 가상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에 면수를 적용한다.
-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 등의 계산방법
 - 가. 백열등 또는 형광등을 이용하는 단순조명 광고물 등과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이행강제금의 1.5배를 적용한다.
 - 나. 광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이행강제금의 2배를 적용한다.
 - 다. 광고물 등의 일부가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 산정금액에 전기사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 법 제10조의3제4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반복하여 부과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직전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의 30%를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 한 업소에서 여러 개의 불법 광고물이 발견되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각 광고물 표시면적을 모두 합산하여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계산한다.

7. 총 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린다.

[별표 5]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의 교육 (제25조제1항 관련)

류	교육시간	교육 내용	교육 대상 및 방법	비 고
신규 교육	6시간	가. 관계 법규(3시간)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등 ※ 대통령령 및 조례를 포함한다. 나. 표시에 관한 사항(3시간) - 색채, 재료, 구조, 제작, 시공, 도시미관, 안전 등	가. 교육대상 - 신규로 옥외광고업에 종사하려는 자 - 옥외광고업 종사자 중 교육을 희망하는 자 (종업원을 포함한다) 나. 교육방법 - 집합교육 - 사이버교육	
보수교육	3시간	가. 관계법규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등 (대통령령 및 조례를 포함한다)	가. 교육대상 - 옥외광고업자(대표자) ※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가 아닌 경우도 가능 나. 교육방법 - 집합교육 - 사이버교육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개정 시
행정처분 대상자 교육	3시간	가. 관계법규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등 (대통령령 및 조례를 포함한다)	가. 교육대상 - 법 14조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옥외광고업자 나. 교육방법 - 집합교육 - 사이버교육 ※ 교육대상자가 적은 경우에는 보수교육 등에 통합 가능	
기타교육	별도 정함	가. 세부 교육시간, 교육내용, 교육대상 등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하여 공고함		

[별표 6]

광고물 등의 허가·신고 수수료(제27조제1항제1호 관련)

	수수료	비 고
가. 가로형 간판		
1) 일반 가로형 간판(2)를 제외한 경우)		
- 면적 6㎡ 이하	4,000원	
- 면적 6㎡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1,500원	
2) 시 조례 제5조제4호 중 건물 옆 벽면 및 뒷 벽면의 4층 이상의 간판 (판류형으로 한정한다)		
- 면적 6㎡ 이하	40,000원	
- 면적 6㎡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2,000원	
나. 세로형 간판		
- 면적 6㎡ 이하	3,000원	
- 면적 6㎡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1,500원	
다. 돌출간판		
- 연면적 3.5㎡ 이하	20,000원	
- 연면적 3.5㎡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1,000원	
- 이·미용업소표지등 및 의료기관 · 약국 표지등(개당)	5,000원	
라. 공연간판	가로형간판 1)과 같음	
마. 옥상간판		
- 연면적 10㎡ 이하	40,000원	
- 연면적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5,000원	
바. 지주 이용 간판		

- 10㎡ 이하	20,000원	
- 연면적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2,000원	
사. 애드벌룬		
가. 공중에 띄우는 것(1개)	20,000원	
나.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	옥상간판에 준함	
다. 지면에 설치하는 것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아.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 연면적 1㎡ 이하	3,000원	
- 연면적 1㎡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1,000원	
자.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교통시설 외부에 표시하는 경우)		
- 면적 또는 연면적 5㎡ 이하	13,000원	
- 면적 또는 연면적 5㎡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15,000원	
차.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1대)		
- 비행선	400,000원	
- 비행기·철도차량·도시철도차량·선박	10,000원	
- 사업용자동차·화물자동차·자가용 자동차	2,000원	
카. 선전탑 및 아치광고물(1개)	5,000원	
타. 창문 이용 광고물(1개)	5,000원	
파. 현수막		
1) 현수막		
- 10㎡ 이하	6,000원	
-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1,500원	

2) 게시시설		
- 10m ² 이하	10,000원	
- 10m ² 초과시 1m ² 마다 더하는 금액	2,000원	
하. 벽보(50매)	5,000원	
거. 전단(1,000매)	5,000원	
너. 광고물등에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경우 (단순조명 및 광원이 직접 노출하지 않는 네온류·전광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외하나, 이 경우에도 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포함)	해당 종류의 광고물 수수료의 2배 적용	

비고: 수수료의 징수방법

1. 영 제9조제1항 관련,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중 광고내용 만을 변경할 때에는 본 수수료의 2분의 1을 적용하되 광고물 등의 규격·사용자재·표시 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는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2. 영 제10조 관련,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본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별표 7]

광고물 등 안전점검 수수료(제27조제1항제2호 관련)

광고물등	적용기준	수수료
가. 가로형 간판(건물 4층 이상에 설치하거나 한 변의 길이가 10m 이상인 경우)	- 연면적 6㎡ 이하 - 연면적 6㎡ 초과 20㎡ 이하 - 연면적 2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14,000원 20,000원 800원
나. 돌출간판(광고물 윗부분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이상이고 1면의 면적이 1㎡ 이상인 경우)	- 연면적 3.5㎡ 이하 - 연면적 3.5㎡ 초과 10㎡ 이하 - 연면적 1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14,000원 20,000원 1,600원
다. 옥상간판	- 연면적 50㎡ 이하 - 연면적 50㎡ 초과 70㎡ 이하 - 연면적 7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21,000원 38,000원 1,300원
라. 지주 이용 간판·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교통시설 이용 광고물(지면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경우)	- 연면적 10㎡ 이하 - 연면적 10㎡ 초과 20㎡ 이하 - 연면적 2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14,000원 20,000원 800원
마. 애드벌룬(4미터 이상의 게시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가.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 나. 지면에 설치하는 것	- 다의 옥상간판에 준함 - 라의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바. 공연간판(4층 이상에 설치하거나 한 변의 길이가 10m 이상인 경우) 시 조례에 신설한 경우에 규정	- 가의 가로형 간판에 준함	
사. 현수막 게시시설	- 연면적 30㎡ 이상 40㎡ 이하 - 연면적 4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11,000원 600원
아. 그 밖의 안전점검 대상광고물	- 같은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제17조에 의거 안전도검사를 위탁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부가가치세를 가산하여 적용할 수 있다.

※광고물 등의 연면적에는 게시시설의 면적을 포함하되, 게시시설은 면적의 2분의 1을 산정하며 (단순지주 산정제외), 전기를 이용하는 경우(백열등 또는 형광등을 이용하여 단순조명을 하는 광고물은 제외한다)에는 해당 수수료액의 1. 5배를 적용한다.

[별표 8]

옥외광고업 등록 수수료(제27조제1항제3호 관련)

분	수수료	비 고
가. 옥외광고업 신규 등록	15,000원	
나. 옥외광고업 변경 등록	7,500원	

: 등록 수수료의 계산방법

옥외광고업의 변경 등록사항 중 다음의 경우에는 수수료의 납부를 면제한다.

- 가. 관할 구역 안에서 주소를 변경한 경우
- 나. 업소명을 변경한 경우

[별표 9]

공공게시시설 사용료(제28조 관련)

분	사용료	비 고
현수막지정게시대(1건당)	8,000	부가세 별도
현수막지정게시대 상단 A급지(1개 소당)	150,000	부가세 별도
현수막지정게시대 상단 B급지(1개 소당)	100,000	부가세 별도
시민게시판(1개 소당)	2,000	부가세 별도
시민게시판 상단(10개 소당)	20,000	부가세 별도

[별표 10]

과태료 부과기준(제29조 관련)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비고
1. 제3조를 위반하여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을 표시한 경우 가. 입간판 1) 도로(보도를 포함한다)에 설치한 경우 가) 연면적 1㎡ 미만 - 0.5㎡ 이하 - 0.5㎡ 초과 0.8㎡ 이하 - 0.8㎡ 초과 1.0㎡ 미만 나) 연면적 1㎡ 이상 2㎡ 미만 - 1.0㎡ 이상 1.3㎡ 이하 - 1.3㎡ 초과 1.6㎡ 이하 - 1.6㎡ 초과 2.0㎡ 미만 다) 연면적 2㎡ 이상 3㎡ 미만 - 2.0㎡ 이상 2.3㎡ 이하 - 2.3㎡ 초과 2.6㎡ 이하 - 2.6㎡ 초과 3.0㎡ 미만 라) 연면적 3㎡ 이상 2) 그 밖의 지역·장소에 설치한 경우 가) 연면적 1㎡ 미만 - 0.5㎡ 이하 - 0.5㎡ 초과 0.8㎡ 이하 - 0.8㎡ 초과 1.0㎡ 미만 나) 연면적 1㎡ 이상 2㎡ 미만 - 1.0㎡ 이상 1.3㎡ 이하 - 1.3㎡ 초과 1.6㎡ 이하 - 1.6㎡ 초과 2.0㎡ 미만 다) 연면적 2㎡ 이상 3㎡ 미만	법 제20조 제1항제1호	13만원 22만원 32만원 42만원 50만원 64만원 75만원 100만원 129만원 130만원+ 연면적 3㎡ 초과하는 면적의 0.5 ㎡당 15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8만원 12만원 14만원 25만원 33만원 49만원	

- 2.0 이상 2.3㎡ 이하 - 2.3㎡ 초과 2.6㎡ 이하 - 2.6㎡ 초과 3.0㎡ 미만		58만원 67만원 79만원	
라) 연면적 3㎡ 이상		80만원+ 연면적 3㎡ 초과하는 면적의 0.5㎡당 8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나. 현수막			
1) 현수막의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가) 면적 3㎡ 미만			
- 1.0㎡ 이하 - 1.0㎡ 초과 2.0㎡ 이하 - 2.0㎡ 초과 3.0㎡ 미만		8만원 12만원 14만원	
나) 면적 3㎡ 이상 5㎡ 미만			
- 3.0㎡ 이상 3.7㎡ 이하 - 3.7㎡ 초과 4.4㎡ 이하 - 4.4㎡ 초과 5.0㎡ 미만		22만원 25만원 32만원	
다) 면적 5㎡ 이상 10㎡ 미만			
- 5.0㎡ 이상 6.0㎡ 이하 - 6.0㎡ 초과 8.0㎡ 이하 - 8.0㎡ 초과 10.0㎡ 미만		42만원 58만원 75만원	
라) 면적 10㎡ 이상		80만원+ 연면적 10㎡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5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2) 1)을 설치하여 차량통행이나 일반인의 보행을 현저히 방해한 경우		해당 과태료의 2배까지 중과	
다. 벽보			
1) 일반 광고내용			
- 1장 이상 10장 이하 - 11장 이상 20장 이하 - 21장 이상		장당 17천원 장당 25천원 장당 42천원	
2)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1 이상 10장 이하 - 11장 이상 20장 이하 - 21장 이상		장당 25천원 장당 33천원 장당 50천원	
라. 전단			
1) 일반 광고내용			
- 1장 이상 10장 이하 - 11장 이상 20장 이하 - 21장 이상		장당 8천원 장당 17천원 장당 25천원	
2)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1장 이상 10장 이하 - 11장 이상 20장 이하 - 21장 이상		장당 25천원 장당 33천원 장당 50천원	
2.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0조 제1항제2호		
가. 30일 이상 90일 미만		67만원	
나. 90일 이상 180일 미만		117만원	
다. 180일 이상 1년 미만		217만원	
라. 1년 이상		400만원	
3. 법 제11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영업소내 옥외광고물 관련 장부 등을 비치하지 아니하였거나 등록번호 등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20조 제1항제3호 및 제4호		
가. 연 1회 위반한 경우		80만원	
나. 연 2회 위반한 경우		200만원	
다. 연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500만원	
4. 법 제16조에 따른 광고물 실명제 표시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한 경우	법 제20조 제1항제5호		
가. 연 1회 위반한 경우		80만원	
나. 연 2회 위반한 경우		200만원	
다. 연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500만원	

5.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법 제20조 제2항		
가. 1회 위반한 경우		25만원	
나. 2회 연속 위반한 경우		45만원	
다. 3회 연속 위반한 경우		100만원	

비고: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

1. 과태료는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틀(광고물의 테두리)은 포함한다.
2.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3. 입체형·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최대 외곽선을 사각형으로 가상 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에 면수를 적용한다.
4.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 등에 대한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 가. 백열등 또는 형광등을 이용하는 단순조명 광고물등과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1.5배를 적용한다.
 - 나. 광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 등을 사용하는 광고물 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2배를 적용한다.
 - 다. 광고물 등의 일부가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과태료 산정금액에 전기 사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5. 최초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법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 대상자가 된 자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직전 과태료 부과금액의 30%를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6. 과태료의 총 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린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3조제1항[별지 제1호서식]

옥외광고물 등 표시(변경)허가 및 신고대장

① 호	광고주()						광고물등의 내용								관리자			⑮ 변 경 사 항	⑯ 비 고
	② 성 명	③ 생 년 월 일	④ 업 소 명	⑤ 전 화 번 호	⑥ 도 로 명	⑦ 소재지 													

364x257mm[보존용지(1종) 70g/㎡]

인천광역시 남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3조제2항 [별지 제2호서식]

옥외광고물
신고필

표시기간
. . . 까지

○ 현 수 막 : 지름 7센티미터 이상

○ 벽보·전단 : 지름 5센티미터 이내

※ 다만, 천공의 방법인 경우에는 이를 변형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18조제3항[별지 제3호서식]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신청서

호		처리기간	30일
	명	생년월일	
	업소명(단체명)		
	도로명 주소		
영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38조 및 「인천광역시 남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1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

월 일

(서명 또는 인)

귀하

구비서류	인천광역시 남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16조에 규정한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자의 자격 및 인원 확보에 관한 증빙서류 사본 1부	수수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참조

210mm×297mm[

60g/㎡(재활용품)]

인천광역시 남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18조제4항 [별지 제4호 서식]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검사 업무 위탁지정서

호		
	명	생년월일
	업소명(단체명)	
	도로명 주소	
영업장 소재지		위탁기간 20 . . . ~ 20 . . . (년 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38조 및 「인천광역시 남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17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합니다.

월 일



210mm×297mm[

60g/㎡(재활용품)]

인천광역시 남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18조제6항 [별지 제5호서식]

가로 6cm x 세로 8cm	바탕색	연록색	글자	검정색
-----------------	-----	-----	----	-----

< 쪽 >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검 사 원 증

사 진
(3.5×4.5)

인천광역시남동구

< 뒤 쪽 >

소 속 :
직 위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자 격 기 한(20 . . . ~
20 . .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9조
에 따른 안전점검 검사원임을 증
명함

년 월 일

직인

인천광역시 남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19조제1항 [별지 제6호서식]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검사서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 쪽)

성 명	생년월일
업소명	전화번호
도로명 주소	검사구분 []신규 []연장 []변경

광고물 등의 허가 일자 및 번호	광고물 등의 종류
표시위치 또는 장소	광고물 등의 규격
신청일자	검사일자

점검내용
점검의견
점검결과 []합격 []불합격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37조 및 「인천광역시 남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을 위와 같이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월 일

소속

직위(직명)

성 명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검사내용 및 기준	검사결과
		및 허가사항의 일치 여부(시설·구조·규격·내용 등의 무단변경 등)	
법	규	각종 법규 및 고시·명령 위반행위	
사용자재		부식방지의 자재 사용 또는 도장시공 여부	
		국가·공공기관에 의한 공인 규격품 및 자재의 사용 여부	
		철근, 앵커볼트, 골조 등 주요 구조부 사용자재의 규격, 밀도, 배치상태 등	
접합부위		콘크리트 기초 표면의 적정경사, 노화, 균열, 변형 등 적합성 및 접합상태	
		접합부분 건물의 강도 확보 : 건물의 균열, 파손, 변형 등(하중, 풍압력 등 고려)	
	구성자재	접합상태, 볼트·리벳·너트 등의 풀림, 마모 등	
		변형, 휨, 균열, 이탈, 파손, 부식 여부 등	
	용접상태	균열, 변형, 부식, 틈 발생 등	
전기설비		배선상태 : 적정용량, 과열, 오손(汚損), 파손, 노후, 노출 등	
		애자 연결부위 등 각종 자재의 상태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의 경우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자재사용 여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규격의 표시인증을 받은 제품사용 여부, 피뢰시설의 적정설치 및 유지 등	
통행		교통신호기, 교통안전표지, 도로표지 등의 기능 장애 사항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 장애	
천재지변, 인위적 상황 변동 후의 점검사항		강풍, 폭우·폭설 후, 폭발·충격 후	
기타		그 밖에 안전·미관·생활·환경 저해여부 및 광고물 퇴색(退色) 여부 등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인천광역시 남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19조제1항 [별지 제7호서식]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대장

① 청 번 호	② 신 청 일 자	신청자			⑥ 광고 물등 허가 일자 (허가 번호)	⑦ 광고물등 의 종류	⑧ 표시 위치 또는 장소	⑨ 광고물등 의 규격	⑩ 검 사 일 자	⑪ 검 사 구 분	⑫ 검 사 결 과	검사자			⑬ 비 고
		③ 성 명	④ 업 소 명	⑤ 도 로 명 주소								⑬ 소 속	⑭ 직 명	⑮ 성 명	

364x257mm[

(1종) 70g/㎡]

인천광역시 남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20조제3항 [별지 제8호서식]

공공게시시설 관리 위탁지정 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업 소 명 (단체명)		전 화 번 호	
	영업장소재지			
종업원 수			사무실 면적	
「인천광역시 남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19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신청인(법인·단체)의 자기소개서 1부. 2. 단체 또는 비영리 법인 : 관련 증빙서류 1부. 3. 인력 및 보유시설·장비 등에 관한 증빙서류 각 1부.				수 수 료 인천광역시남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 참조

210mm×297mm 복사용지 75g/㎡

인천광역시 남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20조제4항 [별지 제9호서식]

제 호

공공게시시설 관리 위탁지정서

수	성 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탁	업 소 명 (단체명)			
자	영업장소재지			
위 탁 기 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위 탁 내 용				

「인천광역시 남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19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위탁자로 지정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인천광역시 남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21조제3항 [별지 제10호서식]

제거 옥외광고물 등 관리대장

① 련 번 호	② 광 고 물 종 류	③ 표 시 내 용	④ 수 량	⑤ 보 관 연 월 일	⑥ 보 관 장 소	⑦ 위 반 장 소 · 위 치	⑧ 담 당 () 자	⑨ 비 고

364x257mm[

(1종) 70g/㎡]

인천광역시 남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21조제4항[별지 제11호서식]

옥외광고물 등 청구서

	성 명	생년월일
	도로명 주소	
광고물 등 종류		수 량
광 고 내 용		

위의 광고물 등을 청구합니다.

월 일

(서명 또는 인)

귀하

옥외광고물 등 인수증

인수인	성 명	생년월일
	도로명 주소	
광고물 등 종류		수량
광고내용		

위의 광고물 등을 인수합니다.

년 월 일

인수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인천광역시 남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22조제4항 [별지 제12호서식]

불법옥외유동광고물 정비보상금 신청 및 지급대장

[illegible]

※ 신청 불법광고물의 광고내용이 많은 경우 정비 목록 현황 별도 작성 첨부

인천광역시 남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22조제5항[별지 제13호서식]

불법옥외유동광고물 정비보상금 지급신청서

신청인	① 성 명		② 전화번호			
	③ 생년월일					
	④ 도로명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신청내역	광고물 종류별		지원비	⑤수량 및 면적 (㎡)	⑥신청금액 (원)	비 고 (지원내역)
	현수막	대형(5㎡ 이상)	1,000원			1면 기준
		소형(5㎡ 미만)	500원			1면 기준
		족자, 깃발형 현수막	300원			1면 기준
	벽보, 전단	20*55cm 이하	3,000원			500매 기준
	음란, 퇴폐성 청소년유해 광고물	20cm 이하	2,000원			500매 기준
주 요 수 거 장 소						
신청계좌	⑦ 예금주	⑧ 은행명 및 계좌번호				
신청내역 확 인	광고물 종류별		⑨수량 및 면적(㎡)	⑩지급예정액 (원)	⑪ 담 당 자	
	현수막	대형(5㎡ 이상)			소속: 직급: 성명: (인) 확인일시:	
		소형(5㎡ 미만)				
		족자, 깃발형 현수막				
	벽보, 전단	20*55cm 이하				
음란, 퇴폐성 청소년유해 광고물	20cm 이하					

※ 지급결정내역(⑨-⑩)은 동 담당자가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불법옥외유동광고물(현수막, 벽보, 전단 등)의 정비보상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귀하

인천광역시 남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22조제5항[별지 제14호서식]

불법옥외유동광고물 정비(철거) 목록

[illegible]

※ 신청 불법광고물의 광고내용이 많은 경우 정비 목록 현황 별도 작성 첨부

인천광역시 남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24조제2항제1호 [별지 제15호서식]

옥외광고물 등 관리대장

[illegible]

364x257mm[

(1종) 70g/m²]

인천광역시 남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24조제2항제3호[별지 제16호서식]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 교육 수료필증

호	
과정명	
교육 수료일자	
	성 명
	소속 업소명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49조 및 「인천광역시 남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24조제5항에 따라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위와 같이 수료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월 일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인천광역시 남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25조제5항 [별지 제17호서식]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이수대장

[illegible]

210x297mm[

(1종) 70g/ m²]

인천광역시 남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25조제7항[별지 제18호서식]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불참신고서

호		
	명	생년월일
	업소명	영업장소재지
	도로명 주소	
교육계획	일 시	
	장 소	
불참사유		

「인천광역시 남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24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에 참석 할 수 없으므로 불참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월 일

(서명 또는 인)

귀하

구비서류	불참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관계서류 사본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인천광역시 남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26조제1항 [별지 제19호서식]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 교육위탁지정신청서

호	30일	
	성 명	생년월일
	업소명(단체명)	
	도로명 주소	
영업장소재지		전화번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50조 및 「인천광역시 남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2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

월 일
(서명 또는 인)

귀하

구비서류	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수수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참조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인천광역시 남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26조제2항 [별지 제20호서식]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위탁지정서

호		
	성 명	생년월일
	업소명(단체명)	
	도로명 주소	
위탁기간	20 . . . ~ 20 . . . (년 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50조 및 「인천광역시 남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2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을 위탁합니다.

월 일



210mm×297mm[

60g/㎡(재활용품)]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 이유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인천광역시 옥외 광고물 등 관리 조례』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 현행 규정을 개선·보완하여, 도시미관을 아름답게 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지역특화발전특구 광고물 등의 특례 (안 제7조)
-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및 외국어 병기 (안 제11조, 제13조)
-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 등의 위탁대상 추가 (안 20조)
- 정비·수거된 현수막, 벽보, 전단에 대한 보상기준 마련 (안 제22조)
- 옥외광고업 등록 전 사전교육 이수 추가 (안 제25조)
-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한 사이버교육 이수 수료 근거 마련 (안 제26조)
- 수수료 금액 변경 및 감면 근거 (안 제27조)

공 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2014-1897호

행정처분(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우리 구의 옥외광고업자 중 등록된 주소지에서 영업을 하고 있지 않은 옥외광고업자에 대하여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를 위반하여, 옥외광고업 행정처분(직권말소)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4. 12. 29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공고제목 : 옥외광고업 행정처분(직권말소)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2. 처분근거 :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47조
3. 처분원인 : 옥외광고업 등록 후 등록된 영업장 소재지에서 영업행위를 하지 않고 무단폐업 등 관련법 위반
4. 처분대상

연번	대 상 자			처분사 유	처분내용
	대표자	업소명	영업장 주소		
1	이정훈	광성사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688(구월동)	무단폐업	직권말소
2	양미숙	미광고디자인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711번길30(구월동)	무단폐업	직권말소
3	이성재	제이와이건설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682, 501호(구월동,로얄빌딩)	무단폐업	직권말소
4	정재영	제이와이기획	인천광역시 남동구 앵고개로847번길 50, 401호(논현동,토브타워)	무단폐업	직권말소
5	이해지	해성광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백범로313(간석동)	무단폐업	직권말소
6	한미숙	TM종합광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정로553(간석동)	무단폐업	직권말소

5. 공고기간 : 2014.12.29 ~ 2015.01.13 (15일간)
6. 공고방법 : 남동구청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7. 문의사항 : 남동구청 도시경관과 광고물관리팀 (☎ 032-453-2283)
8. 유의사항 : 공고기간 기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위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옥외광고업이 직권말소 됨을 알려드립니다.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14-1903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인천광역시 남동구 법제사무처리 규칙」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29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조 례 명 : 「인천광역시 남동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
2. 제정이유 : 「인천광역시 남동구 평생교육진흥 조례」의 전부 개정 및 남동구 평생학습관의 개관에 따라 평생학습관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시설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3. 주요 개정내용
 - 평생학습관의 위치, 운영시간, 이용대상, 이용제한 사항
(안 제2조~안 제5조)
 -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수강신청 방법 및 절차와 수강생 선발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수강료를 정하고 수강료의 수납과 감면, 반환 등에 관한 사항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안 제9조)
 - 평생학습 프로그램 강사로 위촉할 수 있는 자격과 모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
 - 평생학습 프로그램 강사를 위촉 해제할 수 있는 근거와 강사의 의무사항
(안 제11조 ~ 안 제12조)
 - 평생학습관의 시설 사용신청 및 허가절차 등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 평생학습관의 시설 사용허가 제외대상을 정하고 사용허가를 취소·정지 할 수 있는 사항(안 제14조 ~ 안 제15조)

- 평생학습관의 시설 사용료를 정하고 사용료의 납부, 면제 및 반환 절차 등 에 관한 사항(안 제16조 ~ 안 제18조)

4. 의견제출 :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5년 1월 1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참조: 평생교육과장)에게 서면이나 전화 또는 FAX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5-702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청 / ☎ 453-6052, FAX 453-5899)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5. 제정(안) : 별첨

인천광역시 남동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14년 월 일
제 출 자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 제안이유

- 「인천광역시 남동구 평생교육진흥 조례」의 전부 개정 및 남동구 평생학습관의 개관에 따라 평생학습관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시설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평생학습관의 위치, 운영시간, 이용대상, 이용제한 사항을 정함 (안 제2조~안 제5조)
- 나.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수강신청 방법 및 절차와 수강생 선발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6조)
- 다.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수강료를 정하고 수강료의 수납과 감면, 반환 등에 관한 사항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7조~안 제9조)
- 라. 평생학습 프로그램 강사로 위촉할 수 있는 자격과 모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10조)
- 마. 평생학습 프로그램 강사를 위촉 해제할 수 있는 근거와 강사의 의무 사항을 정함 (안 제11조~안 제12조)
- 바. 평생학습관의 시설 사용신청 및 허가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13조)
- 사. 평생학습관의 시설 사용허가 제외대상을 정하고 사용허가를 취소·정지할 수 있는 사항을 정함 (안 제14조~안 제15조)
- 아. 평생학습관의 시설 사용료를 정하고 사용료의 납부, 면제 및 반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16조~안 제18조)

□ 본 문 : “별 첨”

인천광역시 남동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평생교육진흥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인천광역시 남동구 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의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운영시간) 평생학습관의 운영시간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평생교육 진흥에 필요한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4조(이용대상) 평생학습관 및 인천광역시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평생학습 관련 프로그램과 시설의 이용대상자는 구에 거주하는 주민과 구 소재 사업장 등에 소속된 주민을 우선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지역 주민에게도 확대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이용제한) 평생학습관의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생학습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멸실 또는 훼손된 시설물에 대하여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다.

1. 허가 없이 건물·기물 또는 구조물 등의 시설을 훼손한 경우
2. 수강증·회원증 또는 사용증을 타인에게 전매 또는 대여한 경우
3. 시설 내에서 음주 또는 소란을 피우거나 도박행위를 한 경우
4. 그 밖에 다른 이용자들의 보호를 위하여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2장 수강 및 수강료

제6조(수강신청 등) ①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강신청서를 지정된 접수기간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는 프로그램은 홈페이지에 지정된 방법으로 수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수강생 선발은 프로그램별로 선착순으로 한다. 다만, 프로그램의 성격상 필요한 경우에는 추첨 등으로 선발할 수 있다.

제7조(수강료 등) ① 평생학습관 및 구에서 평생학습 관련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강좌의 수강료는 다른 조례와 규칙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 3에 따르되, 강좌의 성격에 따라 구청장이 합리적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수강료를 수납한 공무원은 징수결의를 거친 후 구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8조(수강료 감면)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3.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4.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5. 「노인복지법」 제26조에 따른 경로우대자
6.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구성원
7. 다동이 행복카드 소지자(카드에 올려진 가족을 포함한다.)
8.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9.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10.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저소득가구의 구성원

② 제1항에 따라 수강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감면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수강료 반환) ① 수강신청자가 납부한 수강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수강신청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수강료를 반환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세부기준은 별표 4에 따른다.

1. 프로그램 모집정원에 미달되어 프로그램을 개설하지 못하는 경우
2. 평생학습관의 사정으로 프로그램을 개설 또는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3. 수강생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수강료 반환은 수강신청자 본인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하며, 반환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3호의 경우 카드결제로 납부한 수강료는 카드결제 수수료를 공제한 후 반환할 수 있다.

④ 수강료의 납부 및 반환과 관련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무회계 규칙」 및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

기본 조례 부과징수 규칙」을 준용한다.

제3장 강사의 위촉 및 위촉 해제

제10조(강사의 자격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강사로 위촉한다.

1. 국가, 공인기관, 전문협회에서 인정하는 해당 분야 자격증 소지자
2. 해당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강의 경험이 풍부하고 평생교육강좌 운영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 ② 강사는 교육계획에 따라 공개모집하되, 필요한 경우 추천 또는 초빙의 방법으로 모집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강사로 지원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강사신청서와 별지 제5호서식의 강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④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정하여 지급하고, 강사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강사 이력카드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11조(강사의 결격사유) 제10조에 따라 위촉된 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강사로서 품위를 손상하였거나, 수강생의 참여 저조 등으로 해당 프로그램 운영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될 경우
2. 다수 주민의 민원 발생 등으로 강의가 불가능할 경우
3. 장기치료, 질병, 그 밖의 사유로 강의가 어려울 경우

제12조(강사의 의무) ① 강사는 구청장 및 운영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존중하고 이행하여야 하며, 평생학습관 운영 등과 관련된 각종 교육·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 ② 강사는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매회 별지 제7호서식의 프로그램 운영일지를 작성하여 평생학습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장 시설사용 및 사용료

제13조(시설 사용 신청 및 허가) ① 평생학습관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를 사용예정일 또는 사용기간 개시일 60일 전부터 5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할 시설의

여건에 따라 신청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자가 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지정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를 접수받은 경우에는 사용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시설 사용허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설 사용변경(허가) 신청서를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사용변경 신청일 현재 시설 사용허가 신청접수자의 사용예정일 또는 사용기간 개시일을 고려하여 시설 사용변경허가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사용허가 제외대상) 구청장은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정치적인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종교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4. 시설 또는 설비관리에 차질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5조(사용허가의 취소·정지 등) 구청장은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제14조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1.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2.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납입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3.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
4. 그 밖에 구청장이 다른 이용자의 안전 및 시설물 유지상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6조(사용료 등) ①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표 5에서 정하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용료를 수납한 공무원은 징수결의를 거친 후 구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17조(사용료 면제)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남동구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2. 국가 또는 남동구가 후원하는 비영리행사
3. 남동구 내 평생학습기관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4.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시설 사용료 면제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 ①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사용허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허가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월 단위로 분할납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평생학습관의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거나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사용일수를 제외한 남은 일수에 대한 금액 반환
2. 사용일 5일 전까지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신고한 경우 : 전액 반환
3. 사용일 4일 전에서 사용일 전일까지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신고한 경우 : 10퍼센트 공제 후 남은 금액 반환
4. 사용일 이후에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신청한 경우: 남은 일수에 대한 금액에서 50퍼센트 공제 후 남은 금액 반환

③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반환청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남동구 평생학습관 위치(제2조 관련)

명 칭	위 치	비 고
남동구 평생학습관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51	

[별표 2]

남동구 평생학습관 운영시간(제3조 관련)

구분	층별	시설	운영시간	휴관일
평생 학습관	3층	교육실3,4	평 일 10:00 ~ 22:00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에서 정하는 공휴일 단, 프로그램 운영 상황에 따라 변동

[별표 3]

남동구 평생학습관 수강료 기준(제7조제1항 관련)

대 상	기준금액	비 고
1	20,000원 이하/ 강좌	◦ 실습재료비, 교재비는 본인부담 ◦ 단, 프로그램 운영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3개월	60,000원 이하/ 강좌	
4개월	80,000원 이하/ 강좌	
1년	160,000원 이하/ 강좌	

[별표 4]

남동구 평생학습관 수강료 반환기준(제9조제1항 관련)

순번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1	제 7 조 제 1 항 제 1 호 및 제2호에 따른 반 환 사유의 경우	모집정원 미달 또는 평생학습관의 사정 으로 프로그램을 개설 또는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이미 낸 수강료의 전액
2	제7조제1항제3호의 반환사유에 따른 경우	프로그램 시작 전	이미 낸 수강료의 전액
		총 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전	이미 낸 수강료의 2/3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나기 전	이미 낸 수강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	반환하지 않음
비 고		수업시간은 프로그램 신청기간 중 공고한 총 수업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 2의 경우 수강료 반환 시 카드결제 수수료 공제

[별표 5]

남동구 평생학습관 시설 사용료(제16조제1항 관련)

구 분		면 적	용도	사용료	비 고
시설별	교육실2	66.10㎡	강연,토론, 발표회 사용	냉·난방사용시 15천원/1시간 (미사용시 10천원/1시간)	1회5시간 이내 사용 승인
	교육실3	85.65㎡			
특이 사항	○ 1회 사용시간은 2시간 기준 - 1시간 초과 시 마다 시간당 50% 가산 ○ 평생학습관에 사용신청하여 승인된 학습동아리는 교육실 사용료 면제 - “학습동아리”란 평생교육의 개념과 지역 커뮤니티의 연계를 통한 학습 공동체로서 자발적·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정해진 주제에 대해 학습, 토론, 사회활동을 하며 배움과 나눔을 실천하는 학습 소모임을 말한다.				

<별지 제1호서식>

남동구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수강신청서

접수번호 :

프로그램명	(반)		
요 일		시 간	
성 명		생년월일	(남/여)
전화번호		주 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프로그램 수강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귀하

수 강 료 감 면	대상자	제출서류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수급자증명서, 신분증
	저소득 한부모 가정	저소득 한부모가정 증명, 신분증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본인: 국가유공자증명, 신분증 가족: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등본
	장애인	장애인 복지카드
	만65세 이상의 노인(프로그램 개강일기준)	신분증
	다문화가족(다문화본인, 배우자, 자녀외불가)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행복카드 소지자(3자녀이상 부모 및 자녀)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새터민(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증명서
	외국인근로자	외국인등록증

접 수 증

접수번호 :

프로그램명	(반)		
요 일		시 간	
성 명		생년월일	(남/여)
전화번호		주 소	

※ 참고사항

- ☞ 접수 마감 시 모집정원에 미달되는 프로그램은 개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프로그램별 모집방법에 따라 수강대상자가 확정되면 지정된 기한까지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수강료 미납 시 수강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 평생학습관을 이용하는 사람은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 ☞ 그 밖의 문의사항은 『평생학습관』으로 문의 바랍니다. (☎ -)

<별지 제2호서식>

남동구 평생학습관 수강료 감면신청서

수 강 명	강좌명	() 반)		
	성 명		생년월일	
수 강 료	금 원정 (₩)			
감 면 료	전액감면			
실 제 수강료	금 원정 (₩)			
계좌입금 통 장	거 래 은 행		예금주명	
	계좌번호			
감면사유				

위와 같이 「인천광역시 남동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수강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귀하

제 출 서 류	대상자	제출서류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수급자증명서, 신분증
	저소득 한부모 가정	저소득 한부모가정 증명, 신분증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본인: 국가유공자증명, 신분증 가족: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등본
	장애인	장애인 복지카드
	만65세 이상의 노인(프로그램 개강일 기준)	신분증
	다문화가족(다문화본인, 배우자, 자녀외불가)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행복카드 소지자(3자녀이상 부모 및 자녀)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새터민(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증명서
	외국인근로자	외국인등록증

<별지 제3호서식>

남동구 평생학습관 수강료 반환 청구서

수 강 생	강 좌 명	(반)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납부수강료	금 원정 (W)			
반환사유			수강료 납부일	
공제액	금 원정 (W) * 납부수강료 중 반환되지 않는 금액			
공제 세부 내역	1. 실제 수강한 일수에 따른 수강금액 : 2. 카드결제수수료 : 3. 기타 :			
반환액	금 원정 (W)			
계좌입금 통 장	거래은행		예 금 주 명	
	계좌번호			

위와 같이 「인천광역시 남동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수강료 반환을 청구합니다.

20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귀하

<별지 제5호서식>

강의계획서☐ 강의 개요

강좌명	
강의대상	
강의기간	
운영시간	
강의목적	

☐ 강의 일정

회차	강의주제	강의내용	비고(준비물)
1			
2			
3			
4			
5			
6			
7			
8			
9			
10			
11			
12			

<별지 제6호서식>

강사 이력카드

사 진 (반명합판)	성 명			담 당 강 좌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E-Mail			
학 력 및 경 력				
최종학력	(전공 :)			
자 격·면 허	자 격·면 허 명	발 행 처 (발 급 일 자)	자 격·면 허 명	발 행 처 (발 급 일 자)
년 월 일	주요 학 력 및 경 력 사 항			

※ 해당 증명서류 뒷면 첨부

<별지 제7호서식>

남동구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운영일지

운영일시	20 년 월 일 (: ~ :)
프로그램명	강좌 반
강의장소	
출석인원	명
강의내용	◦ ◦ ◦ ◦
작 성 자	강사성명 (서명 또는 인)
확 인 자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운영일시	20 년 월 일 (: ~ :)
프로그램명	강좌 반
강의장소	
출석인원	명
강의내용	◦ ◦ ◦ ◦
작 성 자	강사 성명 (서명 또는 인)
확 인 자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별지 제8호서식>

남동구 평생학습관 시설 사용(변경)허가 신청서

신청인	주 소						
	단체명		전화	사무실 :			
	성 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자 택 :			
사용목적 (행사명)							
사용시설	기본시설						
	부대시설	1. 냉난방 2. 음향시설 3. 빔프로젝터 4. 기타(,)					
사용기간	20 년 월 일 요일 시 분부터 20 년 월 일 요일 시 분까지 (일간)	사용 회수	오전 오후	회 회	합	계 일 회	
참가예정인원	일 반 : 명, 학생(중고생) 어린이 : 명, 계	명, 명					

위와 같이 「인천광역시 남동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남동구 평생학습관 사용(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귀하

〈별지 제10호서식〉

남동구 평생학습관 시설사용료 면제신청서

신청인	성명 (대표자)		전화번호	
	기관명 (단체명)		개인연락처	
	주소			
사용목적			사용인원	
사용일시			사용장소	
면제사유				

위와 같이 「인천광역시 남동구 평생학습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남동구 평생학습관 시설사용료 면제를 신청합니다.

첨부 : 관계 증명자료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귀하

<별지 제11호서식>

남동구 평생학습관 시설사용료 반환청구서

신 청 인	성 명		연 락 처	유 선 :
	단체명			무 선 :
	주 소		이 메 일	
사용시설			사용료 납부일	20 . . .
납 부 한 사 용 료	금 원정 (₩ 원정)		사용기간	
반환금액	금 원정 (₩ 원정)		공제금액	금 원정 (₩ 원정)
공제금액 세부내역				
계좌입금 통 장	거래은행		예금주명	
	계좌번호			
반환신청 사 유				

위와 같이 「인천광역시 남동구 평생학습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에 따라 남동구 평생학습관 시설사용료 반환을 청구합니다.

20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날인)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귀하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보건소 공고 제 2014-72호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아래 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75조 및 행정절차법 제 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처분사전(청문실시)통지 하였으나 폐문 등으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 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처분사전통지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4. 12. 29.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제 목 :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영업소 폐쇄에 따른 청문 실시
2. 공고기간 : 2014. 12. 29 ~ 2015. 01. 13 (15일간)
3. 당 사 자

연번	업종	신고번호	업소명	영업주	소 재 지	비고
1	식품등 수입판매업	남동구 -249	영신유통	임신호	경인로524번길 24 (간석동)	
2	식품등 수입판매업	남동구 -182	(주)유경물산	조영열	은청로 9 (고잔동, 현대상가 A-122)	
3	식품등 수입판매업	남동구 -128	주식회사 유승무역	한성호	구월남로 284, 1층 (구월동)	
4	식품등 수입판매업	남동구 -171	동서무역	강봉남	인주대로 821 (구월동, 1층)	
5	식품등 수입판매업	남동구 -225	(주)엠케이글로벌 별무역	유동진	논고개로 325 (도림동, 2층일부)	
6	식품등 수입판매업	남동구 -286	성은무역	임병기	담방로 77, 2층 (만수동)	
7	식품소분업	122	봉유통	이준일	장수로 20, 지하1층 (장수동)	
8	식품제조가 공업	228	(주)남남푸드	황규승	호구포로44번길 88 (고잔동)	
9	식품제조가 공업	140	엔 푸드	배은수	남동대로370번길 57-70, 지하1층(남촌동)	

4. 처분내용 : 영업소 폐쇄
5. 사 유 : 시설물 멸실
6. 법적근거 : 식품위생법 제75조(허가취소 등)
7. 청문내역
 - 기 관 명 : 인천광역시남동구청
 - 담당부서 : 식품위생과 유통식품팀(032-453-2754)
 - 청문일시 : 2015. 01. 13. (화) 10:00부터 11:00까지(1시간)
 - 청문장소 : 남동구보건소청사 4층 식품위생과
 - 청문주재자 : 남동구 식품위생과 공중위생팀장
8. 기 타 :
 -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 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을 제출 할 수 있습니다.
 - (2) 귀하께서는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기타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 할 수 있습니다.
 - (4) 기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 유통식품팀 032-453-2754)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보건소 공고 제 2014-73호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 규정을 위반한 건강기능식품수입업에 대하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1조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영업소폐쇄) 전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처분사전(청문실시)통지 하였으나 폐문 등으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처분사전통지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4. 12. 29.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제 목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 영업소 폐쇄에 따른 청문 실시
2. 공고기간 : 2014. 12. 29 ~ 2015. 01. 13 (15일간)
3. 당 사 자

업종	신고번호	업소명	영업주	소재지	비고
건강기능식품 수입업	남동구-25	(주)유경물산	조영열	은청로 9 (고잔동,현대상가 A-122)	

4. 처분내용 : 영업소 폐쇄
5. 사 유 : 시설물 멸실
6. 법적근거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2조(영업허가취소 등)
7. 청문내역

- 기 관 명 : 인천광역시 남동구보건소
- 담당부서 : 식품위생과 유통식품팀(032-453-2754)
- 청문일시 : 2015. 01. 13. (화) 10:00부터 11:00까지(1시간)
- 청문장소 : 남동구보건소청사 4층 식품위생과
- 청문주재자 : 남동구 식품위생과 공중위생팀장

8. 기 타

-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 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을 제출 할 수 있습니다.
- (2) 귀하께서는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기타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 할 수 있습니다.
- (4) 기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 유통식품팀 032-453-2754)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보건소 공고 제 2014-74호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신고(등록)사항 직권말소 예정 공고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내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식품위생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7조의2 규정에 의거 직권말소 예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1. 제 목 :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신고(등록)사항 직권말소 처분
2. 직권말소 예정일자 : 2015. 01. 12.
3. 처 분 근 거 법 규 : 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
4. 공 고 기 간 : 2014. 12. 30. ~ 2015. 01.12. (13일간)
5. 직권말소 처분업소 내역

연번	업종	신고 번호	업소명	대표자	소재지	처분원인 및 내용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일	비고 (말소예정일)
1	식품제조 가공업	216	자연과 사람	전*복	함박뫼로377번길 24-10 (남촌동)	사업자등록 폐업(말소)	2014.01.09.	2015.01.12.
2	식품 소분업	70	럭키할인 마트	정*희	석산로 159 (간석동)	사업자등록 폐업(말소)	2012.03.31.	2015.01.12.

6. 고 지 사 항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에 따라 2015. 01. 12.까지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상기 영업신고 사항에 대해 공고 등의 절차 없이 직권말소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18조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사유가 없는 한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처분청(남동구청장) 또는 재결청(인천광역시장)에 행정심판을 제기 할 수 있으며, 관할법원에 행정소송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7. 본 처분에 대한 문의 : 인천광역시 남동구 식품위생과 유통식품팀 ☎ (032)453-2754

2014. 12. 30.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고 시

남동구 고시 제 2014-164 호

·반 구역조정 결정 고시

천광역시 남동구 통·반 설치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 남동구
통·반 구역 조정내역을 다음과 같이 결정 고시합니다.

- 다 음 -

○ 시 행 일 자 : 2015. 1. 16.부터 시행

○ 통·반 구역 조정 내역 : “ 첨 부 ”

2014. 12. 29.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 반 구역 조정 세부내역 [논현고잔동]

통 · 반 구역 조정현황

구 분	조정전		증감		조정후		비 고
	통	반	통	반	통	반	
남동구	634	3,597	2	5	636	3,602	
논현고잔동	29	171	2	5	31	176	

통 · 반 구역 조정사유 및 내역

기 존	조 정 사 유	조 정 결 과						
26통(6개반)	▪ 변경내역 - 기존 26통에 두었던 6개반을 세대수에 맞춰 2개반으로 조정 <table> <tr> <td>변 경 전</td> <td>변 경 후</td> </tr> <tr> <td>26통 6개반(208세대)</td> <td>26통 2개반(208세대)</td> </tr> </table>	변 경 전	변 경 후	26통 6개반(208세대)	26통 2개반(208세대)	저조로 반수 조정 행정운영 효율성도모		
변 경 전	변 경 후							
26통 6개반(208세대)	26통 2개반(208세대)							
신설	○ 2014년 11월 개발구역 아파트 신규입주에 따른 통·반 신설 ▪ 변경내역 : 2개통 9개반 신설 <table> <tr> <td>변 경 전</td> <td>변 경 후</td> </tr> <tr> <td>-</td> <td>30통 5개반(436세대)</td> </tr> <tr> <td>-</td> <td>31통 4개반(384세대)</td> </tr> </table>	변 경 전	변 경 후	-	30통 5개반(436세대)	-	31통 4개반(384세대)	개발구역 2개통신설
변 경 전	변 경 후							
-	30통 5개반(436세대)							
-	31통 4개반(384세대)							

통 · 반 조정 세부내역

인구 과소 통 반 축소

변 경 전				변 경 후				비고
통	반	관할구역	세대수	통	반	관할구역	세대수	
26	1	푸르지오시티 1~7층 상가, 8~11층, 논현동 650-2	37	26	1	푸르지오시티 1~7층 상가, 8~18층, 논현동 650-2	109	조정
	2	푸르지오시티 12~15층	41					
	3	푸르지오시티 16~18층	31					
	4	푸르지오시티 19~22층	37	26	2	푸르지오시티 19~30층	99	
	5	푸르지오시티 23~26층	31					
	6	푸르지오시티 27~30층	31					

신설 아파트 입주 예정에 따른 통·반 신설

변 경 전				변 경 후				비고
통	반	관할구역	세대수	통	반	관할구역	세대수	
24	5	논현동 755-1 에코메트로 한화꿈에그린아파트(아) 505동 1~20층, 근린생활시설	85	24	5	논현동 755-1 에코메트로 한화꿈에그린아파트(아) 505동 1~20층, 근린생활시설	85	
		4블럭(논현동 749-1)	0	30	1	(아) 401동, 단지 내 상가	100 (예상)	신설
					2	소래휴먼시아(아) 402동 1~14층	84 (예상)	
					3	소래휴먼시아(아) 402동 15~29층	86 (예상)	
					4	소래휴먼시아(아) 403동 1~14층	80 (예상)	
					5	소래휴먼시아(아) 403동 15~29층	86 (예상)	
				31	1	소래휴먼시아(아) 404동 1~14층	84 (예상)	신설
					2	소래휴먼시아(아) 404동 15~29층	86 (예상)	
					3	소래휴먼시아(아) 405동	104 (예상)	
					4	소래휴먼시아(아) 406동	110 (예상)	

통 · 반 구역 조정 현황

▷ 승인일자: 2015.1.16

구분 동명	현행		증감		조정후		비 고
	통	반	통	반	통	반	
계	634	3,597	2	5	636	3,602	
구월1동	36	197	0	0	36	197	
구월2동	41	222	0	0	41	222	
구월3동	25	137	0	0	25	137	
구월4동	31	171	0	0	31	171	
간석1동	38	214	0	0	38	214	
간석2동	20	139	0	0	20	139	
간석3동	47	245	0	0	47	245	
간석4동	39	213	0	0	39	213	
만수1동	35	171	0	0	35	171	
만수2동	33	177	0	0	33	177	
만수3동	23	132	0	0	23	132	
만수4동	32	198	0	0	32	198	
만수5동	28	184	0	0	28	184	
만수6동	33	185	0	0	33	185	
장수서창동	38	197	0	0	38	197	
남촌도림동	34	193	0	0	34	193	
논현1동	39	241	0	0	39	241	
논현2동	33	210	0	0	33	210	
논현고잔동	29	171	2	5	31	176	

고 시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시 제2014-165호

2015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고시

「지방세법」 제4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제3항·제7항의 규정에 의거, 2015년도 건축물 및 기타물건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31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I. 2015년도 건축물 등 시가표준액 결정

1. 결정항목

가. 건물 신축가격 기준액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함(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따라 산정·고시하는 금액)

나. 건물별 시가표준액

- ① 건물 시가표준액 산정체계(산출체계도, 산출요령)
- ② 적용지수(구조지수, 용도지수, 위치지수)
- ③ 경과년수별 잔가율
- ④ 가감산특례(가산대상 및 가산율, 감산대상 및 감산율, 특정 건물에 대한 가산율)
- ⑤ 증·개축 건물 등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출요령
- ⑥ 시가표준액이 시가보다 높은 건물의 시가반영 차등 감산특례
<부록> 건물시가표준액 일람표

2. 세부결정사항

남동구 세무1과에 비치하고 있는 건물 시가표준액표와 같음

II. 2015년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

1. 결정항목

가. 차 량(44,084종)

①정의 ②용어해설 ③시가표준액 ④과표적용요령 ⑤산출예시

나. 기계장비(11,028종)

①정의 ②종류 ③기계장비 연도별 잔가율표 ④시가표준액

⑤적용요령 ⑥산출예시

다. 선박(135종)

①용어정의 ②용어해설 ③내용년수 및 감가율

④선박 및 선박기관 시가표준액표 ⑤시가표준액 적용요령

라. 항공기(217종)

①용어정의 ②종류 ③내용년수 및 잔가율 ④시가표준액표 ⑤ 적용방법

마. 시설물(2,491종)

①용어정의 ②종류 ③내용연수 및 감가율 ④시가표준액 ⑤적용방법

바. 부수시설물(2,361종)

①용어정의 ②종류 ③내용연수 및 감가율 ④시가표준액 ⑤적용방법

사. 입목(97종)

①용어정의 ②용어해설 ③종류 ④시가조사방법 ⑤적용요령 ⑥시가표준액

아. 어업권(군구별 개별고시)

①용어정의 ②종류 ③적용요령 ④산출예시 ⑤양식품종별표준시설내역

자. 광업권(군구별 개별고시)

①용어정의 ②대상 ③용어해설 ④적용요령

차. 회원권(골프·콘도미니엄·종합체육시설이용·승마)(군구별 개별고시)

①용어정리 ②종류 ③시가표준액표

하. 지하자원(군구별 개별고시)

①용어정리 ②지하자원의 대상 ③용어해석 ④시가표준액

2. 세부결정사항

남동 세무1과에 비치하고 있는 기타물건별 시가표준액표와 같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2014-1897호

행정처분(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우리 구의 옥외광고업자 중 등록된 주소지에서 영업을 하고 있지 않은 옥외광고업자에 대하여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를 위반하여, 옥외광고업 행정처분(직권말소)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4. 12. 29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공고제목** : 옥외광고업 행정처분(직권말소)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2. **처분근거** :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47조
3. **처분원인** : 옥외광고업 등록 후 등록된 영업장 소재지에서 영업행위를 하지 않고 무단폐업 등 관련법 위반
4. **처분대상**

연번	대 상 자			처분사 유	처분내용
	대표자	업소명	영업장 주소		
1	이정훈	광성사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688(구월동)	무단폐업	직권말소
2	양미숙	미광고디자인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711번길30(구월동)	무단폐업	직권말소
3	이성재	제이와이건설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682, 501호(구월동,로얄빌딩)	무단폐업	직권말소
4	정재영	제이와이기획	인천광역시 남동구 앵개개로847번길 50, 401호(논현동,토브타워)	무단폐업	직권말소
5	이해지	해성광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백범로313(간석동)	무단폐업	직권말소
6	한미숙	TM종합광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정로553(간석동)	무단폐업	직권말소

5. **공고기간** : 2014.12.29 ~ 2015.01.13 (15일간)
6. **공고방법** : 남동구청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7. **문의사항** : 남동구청 도시경관과 광고물관리팀 (☎ 032-453-2283)
8. **유의사항** : 공고기간 기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위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옥외광고업이 직권말소 됨을 알려드립니다.